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2018

시민옴부즈만 운영보고서



The Way to Better Living
같이 열리는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목 차



I . 총 평	3
1. 시민옴부즈만 인사말	5
2. 2018년 시민옴부즈만 활동 개요	6
3. 2019년 시민옴부즈만 운영방향	9
II . 옴부즈만 제도 소개	11
1. 옴부즈만 개념	13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13
3. 옴부즈만 기능과 특징, 효용성	15
III .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개요	17
1.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19
2. 시민옴부즈만 소개	20
3. 시민옴부즈만 운영 일반	22
4. 고충민원 처리절차	23
IV .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	27
1. 고충민원 처리 현황	29
2. 옴부즈만 직접조사 결정 민원 처리현황	30
3. 기타 민원처리 현황(이첩·각하·상담처리 등)	37

V.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	45
1. 개발제한구역 원상복구명령 부당	47
2. 제과점 식빵 유통기한 표기오류로 인한 과징금 부과 부당	50
3. 전곡산업단지 오페수 부담금 처리비용 부당청구분 반환 요청	54
4. 개발행위준공 신청 반려처분 취소 요청	56
5.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요청	61
6. 불법축조물로 인한 도로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 시정 요구	63
7. 농수로에 도로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으므로 원상복구 요청	64
8.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요구	66
9.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제기	68
10. 잘못 부과된 납부세금 반환 요청	70
11. 건축허가기간 연장 요청	71
12. 건축물 설계변경에 따른 이의 제기	73
13. 수목장림 조성허가관련 공사중지 명령 부당	75
14. 개발행위준공신청 반려처분 취소 요청	77
15.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지연 불만	80
16.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시 보완 요구 부당	81
17. 기타 수범사례	83
VI. 부 록	85
1. 홍보활동	87
2.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2
3.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99
4.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세칙	103

I

총 평

1. 시민옴부즈만 인사말
2. 2018년 시민옴부즈만 활동개요
3. 2019년 시민옴부즈만 운영방향

I. 총 평

1. 시민옴부즈만 인사말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은 2015년 6월 1일 개소하여 이제는 출범 4년차로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향상의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18년은 급격한 도시발전과 동탄2 신도시 입주 및 동부권 고충민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부 출장소에서 시민옴부즈만 2명이 2월부터 순환 근무를 하여 동부권 지역에 옴부즈만을 확대 운영 하였고

10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옴부즈만 읍면동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 운영의 틀을 마련하고 “시민의 열린 소통창구로의 정착”을 목표로 활동했던 지난해의 부족했던 활동을 되돌아보고 출범 5년 차인 올해에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해소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고충을 찾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민옴부즈만 활동성과를 되돌아보면, 시민옴부즈만은 총199건의 민원을 직접 상담하여 그 중 86건을 즉시 상담 해소 등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 113건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그 중 53건을 직접 조사·처리하였으며, 나머지 도로, 교통 등 생활불편 민원 53건은 해당부서에 바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접 조사한 53건 중 2018.12말 현재 조사가 완료된 46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의견표명 3건 시정권고 1건, 심의해소 12건, 심의종결 27건, 취하 3건으로 인용률(의견표명~심의해소)은 4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시민옴부즈만의 직접조사율을 높이고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대한 수용률을 제고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확대 운영을 통해 생활 밀착형 민원해소와 시민들에게 실질적 민원 해결로 고충을 덜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2018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표합니다.

2019. 2.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일동

2. 2018년 시민옴부즈만 활동 개요

인구 100만 대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시는 각종 개발수요 증가 및 인구유입으로 복잡다기한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6월 시민옴부즈만이 출범하게 되었다.

또한,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대책으로 동탄2신도시 입주 및 동부권 고충민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월부터 시민옴부즈만 2명이 동부출장소에 파견 나가(주1회, 월요일) 생활밀착형 민원해소와 고충민원의 실질적 해결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에 역량을 쏟았고

2018년 10월부터 2개월 동안 시민옴부즈만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시민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읍면동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였다.

한편, 운영 4년차인 2018년은 시민의 열린 소통창구로서의 확고한 정착을 목표로 고충민원 해결에 매진하여 직접조사율과 인용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고 나름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냈다.

이는 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시민들에게 공정한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고 행정기관에는 고질적인 관료주의의 한계에 벗어나 자기시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우리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상반기 운영실적 간담회(2018.07.23.)



운영회의(2018.10.27.)

2018년 접수 처리한 민원은 일반 상담민원 처리 86건을 제외한 총 113건으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용이 단순하고 생활불편 해소 요구 등 해당부서에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민원(53건)은 이첩 처리하였고,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열거된 직무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및 사인간의 권리관계 등 관련 민원(7건)은 각하 하였으며, 나머지 53건을 시민옴부즈만이 직접 조사 처리하였다.

○ 민원접수 처리 및 일반 상담민원 처리현황

총계	민원접수 처리				일반 상담민원 처리		
	계	직접조사	이첩	각하	계	상담안내	상담해소
199	113	53	53	7	86	71	15

또한, 접수방식별 현황을 살펴보면 방문 접수(54건), 인터넷 접수(51건), 팩스 접수(5건), 우편 접수(3건) 순이었다.

○ 접수 방식별 현황

총계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113	54	51	5	3

○ 직접조사 민원 처리현황

조사건수	처리현황		처리완료 내역						
	완료	진행	조사완료 (계)	취하	심의 종결	심의 해소	합의 (조정)	의견 표명	시정 권고
53	46	7	46	3	27	12	-	3	1

직접조사 민원 53건은 주로 도로교통, 인허가 분야가 많았고 2018년 12월말 기준 조사완료된 것이 46건이고, 조사진행중 7건으로, 완료된 46건 중 16건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심의해소 등으로 인용처리되었는 바, 봉담읍 내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성토)한 것에 대하여 시정완료 통지를 받았는데 담당자가 바뀌어 다시 원상 복구하라고 한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한 민원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서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행위는 절토, 성토 등의 형질변경인 행위이지 식재작물의 종류가 아니며 답(畓)에 밭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하여 불법 행위인 것은 아니므로 다시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철회하도록 시정권고하여 담당부서에서 수용하였고,

○○농협하나로마트 내에 제과점에서 유통기한 1일이 경과한 제품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5,850,000원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다소 가혹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1/2범위 내에서 경감 처분할 것을 의견표명 하였다.

또한, 전곡산업단지에 입주한 ○○(주)를 물 함유량 95% 상당인 수용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상수도 물을 사용하면서 폐수는 전량 위탁처리하고 종업원 9명에 해당 오수만 배출하는데 상수도 사용량의 90%에 해당하는 오,폐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처리비용을 산정·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에 대해 비록 법령에 근거해 부과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제보다 과다 부과한 가혹한 측면이 있어 과다 부과된 3,230,800원을 환불하도록 의견 표명하였다.

고충민원 처리 시 시민의 입장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여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관행 및 담당공무원의 소극적인 법령해석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물론 일부 민원은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고 무리한 주장인 경우도 있었고, 다수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달라 중재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민원인들은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시민옴부즈만이 행정통제의 한 축으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시민권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시는 타시군에 비해 옴부즈만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어 파주시, 상주시 등에서 우리시 옴부즈만 운영현황 및 방법 등에 대해 벤치마킹 한 바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옴부즈만 협의회에 가입하고 지속적인 워크숍 참석을 통한 지방옴부즈만 제도발전, 정착 및 확산에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우리시 옴부즈만 벤치마킹 - 파주시 방문(2018.02.21.)



우리시 옴부즈만 벤치마킹 - 상주시 방문(2018.08.06.)

3. 2019년 시민옴부즈만 운영방향

2018년은 시민의 열린 소통창구로의 정착을 위한 노력의 한해였다면 2019년에는 시민옴부즈만 활동의 실질적 운영성과 확보와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통제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이에 2019년도를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중재 역할과 사각지대에 놓여 풀리지 않는 문제를 여러가지 현실적인 대안과 심도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질적으로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확대 실시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전개하여 시민 및 집행부서 직원의 옴부즈만에 대한 인지도를 넓혀 나가고 국민권익위 주관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이 한층 더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옴부즈만 제도 소개

1. 옴부즈만 개념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3. 옴부즈만 기능과 특징, 효용성

II. 옴부즈만 제도 소개

1. 옴부즈만 개념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의 보호제도임.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1) 행정의 권한 증대 및 다양화·복잡화·전문화

복지국가 지향에 따른 행정권 강화 현상은 행정재량권의 확대를 초래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고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입법부나 사법부는 행정의 전문성 및 정보가 부족하고, 정당·압력단체(pressure group) 등은 상대적으로 권한과 기능이 약화되어 행정통제 및 견제 기능 미흡하며, 특히 행정재량의 영역은 복잡·다양하여 의회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개별적이며, 사법제도로 다루기에는 추상성을 띠고 있어 통제가 필요함.



(2)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

사법적 구제수단의 경우 사후통제 수단으로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나 방법 또한 까다롭고 복잡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의 시민권익 침해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존의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구 분	옴부즈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목 적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부담을 받은 경우 권익구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독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시민의 권익구제
성 격	비쟁송제도	쟁송제도	쟁송제도
기 간	제한 없음	행정처분후 90일 이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범 위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부작위, 불편·부담 등 포괄적	행정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행정의 적법성 유무 (재량권 일탈·남용 포함)
접근성	접근성 높음	행정소송보다는 접근이 용이	접근성이 매우 어려움
비 용	무료	행정소송보다는 경제적 부담은 적은 편	경제적 부담이 높음

(3) 행정의 자기시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

지방옴부즈만이 지자체 관할 내의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적·중립적 시각에서 판단하여 시민과 행정 양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간 완충 역할 및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특히 법규만능주의, 소극적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지자체가 신속히 시정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심리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4) 고객중심의 행정가치 대두

과거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주로 국가 통치행위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으나, 국가도 공공재 제공의 한 주체이며 국민은 ‘공공 서비스 소비자’라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객중심의 행정 가치는 국민인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져, 이를 위한 고객 현장제도가 널리 확산·보급됨.

3. 옴부즈만 기능과 특징, 효용성

(1) 옴부즈만의 기능

① 행정통제 기능

옴부즈만은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②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옴부즈만은 행정과 시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조정역할을 함으로써 사법구제 제도의 한계로 인해 양자 간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비용의 부담 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음.

③ 행정개혁 기능

행정의 속성상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 지속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 행정기관 스스로 개선이 어려우며, 옴부즈만은 이러한 관성을 깨트려 위법·부당한 행정 관행이 개선되도록 자극을 줄 수 있어 행정개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특히, 의견표명·시정권고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드러운 법률(soft law)”의 적용을 통해 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할 때에 처리기준이 될 수 있으며,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행정행태를 바로잡는 순기능이 있음.

④ 행정정보의 공개 기능

옴부즈만은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 요청 시 신청인에게 열람·복사하여 줄 수 있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

⑤ 민주적·정치적 대변(代辯) 기능

계층·부문·지역·집단 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이해가 상충될 경우 행정기관은 대체로 힘 있는 다수를 대표하는 결정을 하게 됨. 이러한 과정에서 소수집단, 소외 및 취약계층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옴부즈만은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

(2) 옴부즈만의 특징

- 옴부즈만은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짐.
- 옴부즈만은 법률·행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 뛰어난 인격자 중에서 선출.
-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과 달라 행정작용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취소 및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음.
-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접근 용이성을 가지고 있음.
- 민원을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기 때문에 대개 무료.
- 옴부즈만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
- 대부분 개인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계됨.

(3) 옴부즈만의 효용성

- 지방단위에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옴부즈만의 존재만으로도 옴부즈만이 없을 때보다도 더 신중한 행정행위를 할 것이 예상됨.
- 지방의회는 행정절차와 실무를 감독하고 개선하는데 더욱 용이하게 되어 이를 더 관찰하고 개선할 수 있음.
- 옴부즈만은 행정행위로부터 기인하는 대중의 불만과 어려움을 감소시키며, 시민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도울 수 있음.
-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상당부분 관계를 맺고 있는 관료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인식을 감소키는 효과가 있음.
- 특히 지방자치 단체가 자기 사무에 대한 고충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지역차원의 자율적 해결을 유도해 내고, 이로 인해 중앙으로부터 독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



Ⅲ

구성 및 운영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2. 시민옴부즈만 소개
3. 시민옴부즈만 운영 일반
4. 고충민원 처리절차

Ⅲ. 구성 및 운영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1) 도입배경

- 우리시는 급속한 개발과 인구유입으로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행정구제 제도만으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 직제와는 별개의 독립적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추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세칙」

(3) 추진경과

- 2013.08.19.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기본방안 수립
- 2013.12.31.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 2014.06.27.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공포
- 2015.02.27.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공포
- 2015.03.11.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15.03.12. :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
- 2015.04.17. :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한 시의회 동의대상자(위촉예정자) 선정
- 2015.05.20. : 시의회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통과
- 2015.05.26. : 제1기 시민옴부즈만 위촉
- 2015.06.01. : 시민옴부즈만 개소
- 2017.01.09.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공포
- 2017.02.28. : 제2기 시민옴부즈만 재위촉(3명)
- 2017.10.30. : 시민옴부즈만 추가 위촉(2명)

2. 시민옴부즈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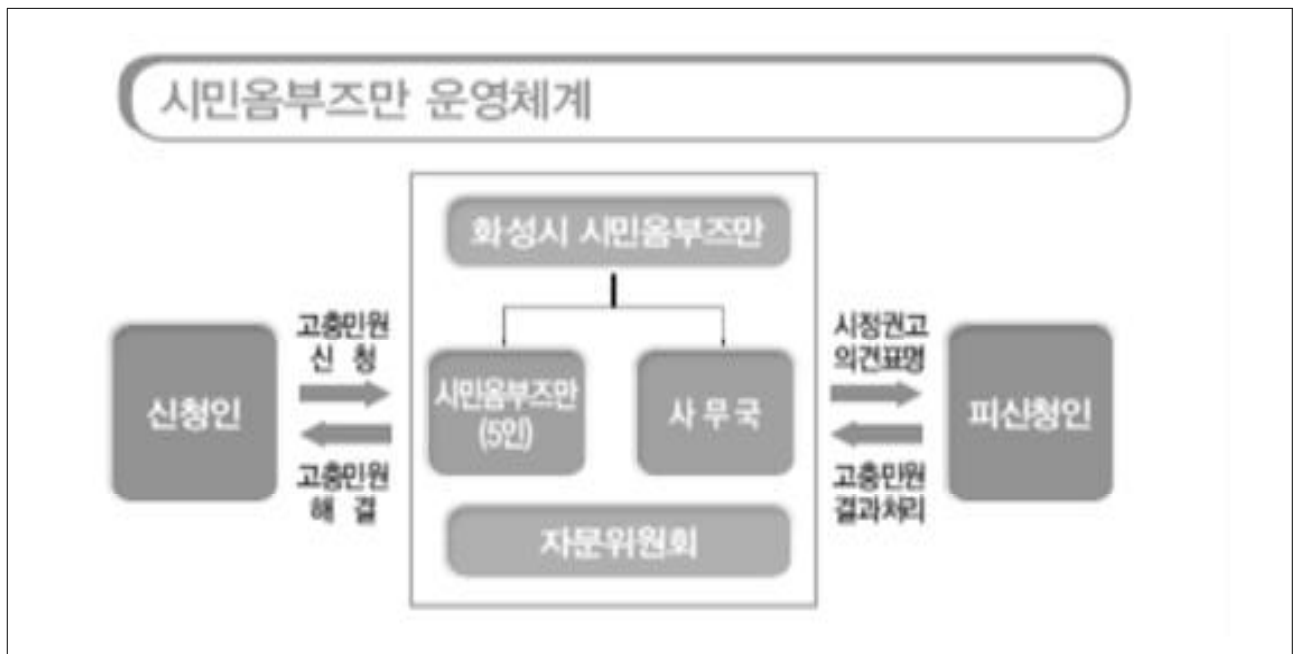
(1) 시민옴부즈만 구성개요

- 시민옴부즈만 수 : 5명
-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 직 무 :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2) 시민옴부즈만 구성현황

옴부즈만		주요경력	위촉기간
박종풍 (대 표)		■ 감사원 공공감사국 등 고위감사공무원 ■ 재단법인 국가관세정보망 연합회 상임감사	2017.06.01. ~ 2019.05.31.
김진환		■ 화성시의회 부의장 ■ 화성시의회 의장	2017.06.01. ~ 2019.05.31.
조중익		■ 화성서부경찰서 경무과장 ■ 화성동부경찰서 동탄, 안용 지구대장	2017.06.01. ~ 2019.05.31.
강성구		■ MBC 보도국장 및 사장 ■ 前 국회의원	2017.11.01. ~ 2019.10.31.
김시관		■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 등 고위감사공무원 ■ 흥국화재보험 상임감사, 고문	2017.11.01. ~ 2019.10.31.

(3) 시민옴부즈만 운영체계



※ 사무국장은 대표 시민옴부즈만이 겸임함.

3. 시민옴부즈만 운영 일반

(1) 시민옴부즈만의 자격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2) 시민옴부즈만의 임기 및 구성

- 2년 (1회 연임 가능)
-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하며, 화성시 시의회 동의 후 시장이 위촉

(3) 시민옴부즈만의 직무

-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가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4) 시민옴부즈만 직무관할

-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5) 시민옴부즈만의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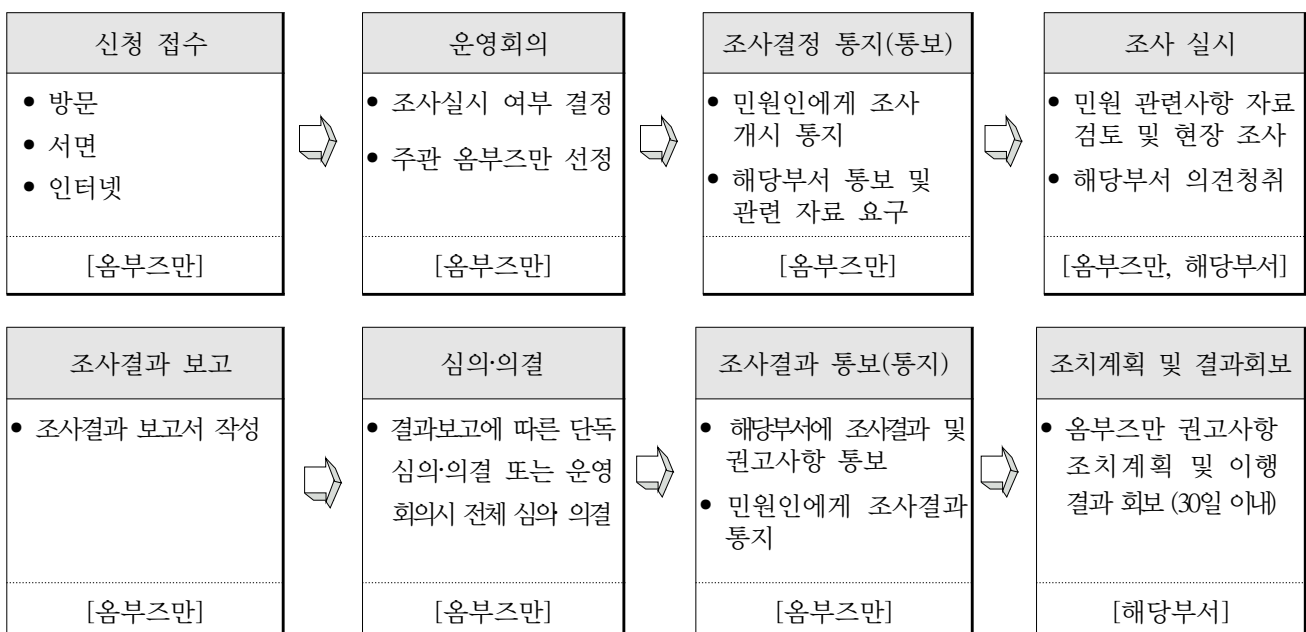
- 관계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 조사내용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감사의뢰

4. 고충민원 처리절차

(1) 고충민원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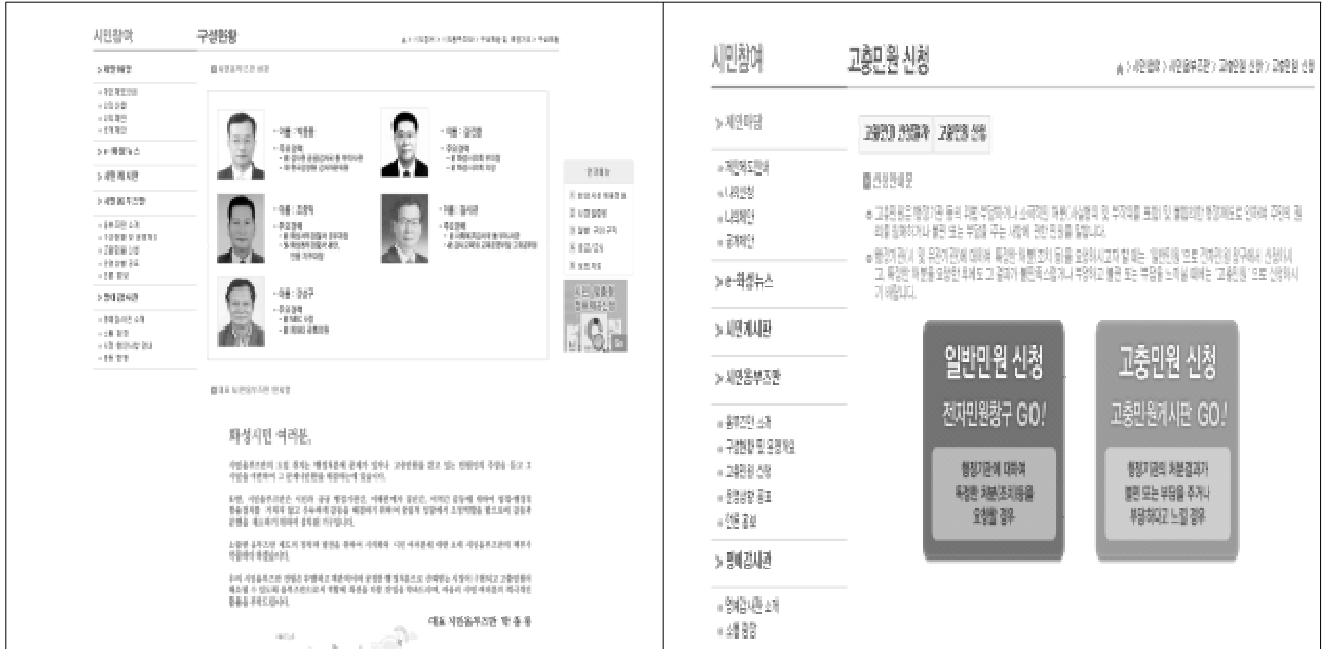
구 분	일반적 정의	구체적 정의
내 용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함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2) 고충민원 처리절차



(3) 고충민원 신청방법

- 직접방문, 모사전송 및 우편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시민옴부즈만실(본관 3층)
- 인터넷 신청 : 고충민원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
(www.hscity.net : 홈 > 시민참여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 신청)



[※ 시 홈페이지 고충민원 신청 게시판 화면]

- 문의전화 : 031-369-3704, 3227 (팩스 031-369-1788)

(4) 고충민원 제외(이첩·각하) 대상

- 단순 일반민원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 직무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5) 고충민원 처리결과 유형

구 분	직접조사 여부	내 용
시 정 권 고	여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의 건 표 명	여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도 개 선	여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 정	여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에 의하여 조정
합 의	여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또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 성립된 경우
기 각	여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 의 해 소	여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신속히 해결방안을 안내하여 해소되거나 피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해소된 경우
심 의 종 결	여	신청인의 요구사항 관련 행정기관에서 수용하기가 어렵거나 뚜렷한 해결방안 제시 또는 관계인과 조정·중재가 불가하여 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이 첩	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하는 경우
각 하	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여 각하하는 경우
상 담 안 내	부	민원상담 과정에서 단순민원 내용으로 해당부서로 안내 또는 관련 부서 담당자 연계처리 하는 경우
상 담 해 소	부	민원상담 과정에서 단순민원 내용으로 해당부서 담당자 의견청취 및 관계 법령 확인을 통해 민원내용을 즉시 해소하는 경우

IV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처리현황
2. 옴부즈만 직접조사 결정 민원 처리현황
3. 기타 민원처리 현황

IV.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처리 현황

(1) 민원 접수 및 일반 상담민원 처리현황

총계	민원접수 처리				일반 상담민원 처리		
	계	직접조사	이첩	각하	계	상담안내	상담해소
199	113	53	53	7	86	71	15

(2) 접수 방식별 현황

총계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113	54	51	5	3

(3) 월별 접수현황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3	3	6	12	10	21	3	4	10	12	8	12	12

(4) 민원 분야별 접수현황

총계	일반	도로 교통	환경	불법 행위	도시 계획	세무 회계	복지 교육	인허가	보건 위생
113	26	33	8	8	2	1	1	34	

(5) 직접조사 민원 처리현황

조사건수	처리현황		처리완료 내역						
	완료	진행	조사완료 (계)	취하	심의 종결	심의 해소	합의 (조정)	의견 표명	시정 권고
53	46	7	46	3	27	12	-	3	1

2. 읍부즈만 직접조사 결정 민원 처리현황

연번	민원요지	처리결과	주 관 읍부즈만	완료 여부
1	농업진흥지역 블루베리 가공처리시설 허가 신청에 대한 불만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지전용 심사기준에 따라 경지 정리 시행 등 우량농지는 농지로 보전가치가 커서 농지 전용허가를 제한하고 있고 식품제조 가공 허가는 가설 건축물(농막)에서의 허가는 해당되지 않아 민원 종결함	김진환	완료 (심의종결)
2	토지를 매입하려고 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했는데 현황상 도로라 발급을 안 해주고 있으니 시정 요청	해당농지가 현황상 도로라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불허한 사안이 아니고 신청인이 일반법인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요청하여 마도면에서는 일반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한 과정에서 신청인이 잘못 알고 민원 제기한 사항으로 민원제기 이후 2018.01.19. 개인자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기에 민원 종결함	조중익	완료 (심의해소)
3	본인 동의 없이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으니 원상복구나 정당하게 보상 요청	해당토지는 2014.03.21. 소하천으로 지정(화성시 고시 제2014-18호)되었고 현재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은 없으며, 향후 정비사업수립 시행시 적법절차에 따라 보상이 가능함	강성구	완료 (심의종결)
4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정)를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 요청	개발제한구역 제30조에서 규정한 위반행위자 또는 불법행위관련자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여, 피신청인이 토지소유주에게 내린 시정명령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원 종결함	김시관	완료 (심의종결)
5	원룸 소유자의 불법 축조물로 인해 공장과 마을주인이 도로 이용시 시야 미확보 및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니 시정 요청	시야확보를 위해 보강토 옹벽은 차량소통 및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 조치하고, 구거 98㎡는 사용허가 하는 방식으로 민원 해소됨	박종풍	완료 (심의해소)
6	제과점 요플레 케익 유통기한이 원래 6일인데 직원의 실수로 라벨지를 잘못 부착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으로 보관 및 진열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너무 가혹하니 선처 요청	신청인에게 15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5,850,000원의 행정처분은 다소 가혹한 행정처분 이므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1/2범위 내에서 경감할 것을 의견표명 함	조중익	완료 (의견표명)
7	농수로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니 원래 농수로로 이용할 수 있게 조치 요청	해당토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취소로 민원 해소됨	김진환	완료 (심의해소)
8	도시계획시설 조속한 준공 요청	사업시행자가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 완료하고 합동점검결과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준공처리하기로 하였기에 민원 종결함	김시관	완료 (심의종결)

연번	민원요지	처리결과	주 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9	상수도 동파로 인한 요금 감면 요청	민원 조사 중 신청인이 민원 취하함.	김진환	완료 (조사중 취하)
10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반려) 처분을 받음.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반려한 것이 이해할 수 없어 민원 제기함.	민원 조사결과 위법, 부당하게 처분한 사실이 없어 민원 종결함	김시관	완료 (심의종결)
11	전곡산업단지에 입주한 회사로 폐수는 공정 상 전량 위탁처리하여 오수만 배출하는데 상수도 요금 90%를 오폐수 비용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산업단지입주업체 중 상수도를 사용하여 수분함량 95%이상의 수용성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대하여 유입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한 오폐수 처리 부담금(6개월분, 계 3,432,400원)을 방류되는 출구에 유량계를 부착한 후, 측정한 3개월분 오폐수 처리 부담금의 최고치 월33,600원(6개월분, 계 201,600원)을 기준으로 재산정 하고 그 차액(3,230,800원)을 되돌려 줄 것을 의견표명함	박종풍	완료 (의견표명)
12	담배소매인 지정이 기준에 맞게 되었는지 확인 요청	담배소매인 지정당시 화단으로 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격거리가 충족되어 지정을 받았으므로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어 민원 종결함.	강성구	완료 (심의종결)
13	폐기물배출사업을 시에 등록하고 1년6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안내 고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은 억울하니 과태료를 취소하고 적법하게 교육이수를 받을 수 있게 민원 제기함	민원 조사 중 신청인이 민원 취하함.	조중익	완료 (조사중 취하)
14	토지를 경매 받아 낙찰 받았는데 6개월이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현 상태가 공부상 답이 아닌 잡종지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면 신청인은 농지원상복구비용과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니 재고바람	민원 조사결과 해당토지의 취득세 세율(지목:답) 적용은 적법하게 처리되어 민원 종결함.	김진환	완료 (심의종결)
15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변경 요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6조(납부의무자)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있고, 개발행위 준공일('16.10.5.) 토지소유자가 ○○○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당함	박종풍	완료 (심의종결)

연번	민원요지	처리결과	주 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16	농지전용 부담금 환급 요청	개발행위허가지 허가취소로 인한 농지전용부담금 환급금 반환 요청건에 대하여 환급금 결정 청구 안 내로 민원종결함	조종익	완료 (심의종결)
17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이행강제금을 잘못 부과한 면적(24.08㎡)분에 대해 금1,726,320원 취소 조치하고, 불법면적(12.24㎡)에 대하여만 850,680원을 부과하여 민원 해소함	강성구	완료 (심의해소)
18	시 행정업무에 대한 불만 제기	민원 조사 중 경찰서에 고발되어 수사 진행중인 사항으로 각하 함	김시관	완료 (조사 중 각하)
19	동탄면 중리 저수지 용도폐지 민원	신청인이 요구하는 내용은 경기도와 화성시 감사 관에서 세부적으로 감사 진행 후 행정처리 중인 사항으로 민원 종결함	김진환	완료 (심의종결)
20	동탄2 주차장 부지 매입 후 자동차관련시설 건 축중에 주민들의 소송제기로 공사가 중단되었 음으로 지원시설용지를 화성시에서 추천 요청	해당부서에서 건축허가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고, 주민들과 ㈜○○의 합의(판금,도색,세차장등 제외)에 화성시가 동의한 바 없고,그로 인한 ㈜○○의 손해액 이 얼마인지 헤아릴 수도 없으며 설사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액을 화성시가 물어줘야 하는지도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물어주는 방식도 지원용지 추천방식 으로 하는 것이 특혜시비가 있다는 의견이 타당함으 로 민원을 종결 처리함	박종풍	완료 (심의종결)
21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제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연기허가 기간 중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볼 수 없 어 2차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아 민원 해소 됨	조종익	완료 (심의해소)
22	장애인이동지원센터 호봉제 전환 관련 불공정 호봉책정 이의 제기	신청인은 공개채용 공고문에 제시한 보수조건에 합당한 급여 및 호봉을 부여받고 급여가 깎인 사실도 발견할 수 없어 민원 종결함	박종풍	완료 (심의종결)
23	건축허가 승인 부적정 이의 제기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한대로 건물 옆 계단을 이용 하여 출입하도록 하고 민원 종결함	김진환	완료 (심의종결)
24	개발행위 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와 비로 토 사가 흘러내려 붕괴 위험이 있으니 피해방지 대책(배수로 설치, 토사유출 방지대책 등) 요청	개발행위 허가지 안전진단결과 안전관리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행여부를 허가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민원 종결함	박종풍	완료 (심의종결)
25	지적재조사 사업시 늘어난 면적을 원래면적 대로 되돌려 주기 바람	상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 되었고 신청인의 동의서, 의견제출 기일의 경과, 불복 의사 표명이 없었던 점 등 사업진행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민원 종결함.	조종익	완료 (심의종결)

연번	민원요지	처리결과	주 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26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완료가 되었음에도 다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함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성토 및 개전행위가 자진 시정되었다고 종결처리한 후 토지의 형상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한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간과한 것이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함	김시관	완료 (시정권고)
27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방지 요청	-	조중익	진행중
28	개발부담금 가산금(연체료) 탕감 요청	개발부담금 가산금 부과가 위법하거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개발부담금 본금(1억6,640만원)은 이미 완납하였으므로 저당권 설정을 가산금 상당액(1,050만원)에 대해서만 감액 설정하고 초과되는 저당권은 해제하며, 가산금도 분납할 수 있도록 분납을 허용하기로 하고 민원 종결함	박종풍	완료 (심의종결)
29	1층 테라스 캐노피 철거 부당함	국토부 질의 회신 결과 공동주택의 외벽에 시설물을 늘리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에 따른 증설 행위도 허가 대상이므로 해당 시군구의 건축심의를 받아 설치 가능한 것으로 민원 종결함	김진환	완료 (심의종결)
30	건축신고 수리 후 착공 불가 부당함 제기	-	조중익	진행중
31	우정산업단지 내 건축물 사용승인 부적정	개발행위 준공신청을 처리하면서 진출입 도로부지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보완요구하였으나 이건 도로부지는 건축물의 출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도로로 지정 공고하여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갖추었고, 신청인이 도로부지 지분권자 과반수 이상의 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에 관한 사용승낙의사가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개발행위허가 준공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김시관	완료 (의견표명)
32	지적 오류로 인한 기 납부세액 반환 요청	지적공부 오류로 과다부과된 면적(265㎡)분 2014~2017년 재산세 94,820원을 해당부서에서 환급함으로 민원 해소됨	박종풍	완료 (심의해소)

연번	민원요지	처리결과	주 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33	건축허가 기간 연장 요청	시도74호선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2018.09.18. 고시됨에 따라 도로구역선이 포함되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건축물 착공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민원해소 됨	김진환	완료 (심의해소)
34	건축물 설계 변경 이의 신청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고 재신청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한 바 지반의 붕괴와 재해 예방 조치로서 사람, 인근 가옥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건축신고를 변경할 수 있다는 협의결과에 따라 2018.12.24. 신고사항 변경 처리되어 민원 해소됨	조중익	완료 (심의해소)
35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 시 부당함 이의 제기	신청인 취하원 제출로 민원 종결함	김시관	완료 (취하)
36	고물상 허가 적법 문제 및 관정 폐쇄 부당	-	김시관	진행중
37	부당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요청	조사 진행중 2018.12.28.자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 352051(통행금지방해 등) 소송이 제기되어 각하 처리 함	박종풍	완료 (조사 중 각하)
38	사도상 방해물, 적치물 제거 요청	조사 진행 중 건축물 진입로 토지 인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각하 처리 함	김진환	완료 (조사 중 각하)
39	수목장림 조성허가 관련 공사중지 명령 부적정 민원 제기	담당부서 스스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공사중지를 해제하여 민원이 해소됨	조중익	완료 (심의해소)
40	공장설립 준공 및 개발행위 부적정	-	김시관	진행중
41	인근 토지 간 경계분쟁 사전 예방 조치 요청	토지 소유자 연락처 파악 불가로 민원 종결함	박종풍	완료 (심의종결)

연번	민원요지	처리결과	주 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42	남양읍 온석리 교통개선대책 요청	교통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진입로 교통개선에 대한 접속도로의 공사진행 및 완공, 마을버스 운행실태 적정성 여부, 행복택시제도 도입여부에 따른 조례 개선, 교통안전심의회 수시개최 등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민원 종결함	조중익	완료 (심의종결)
43	건축물대장 표시(면적) 변경 요청	민원조사 중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각하 처리함	박종풍	완료 (조사 중 각하)
44	사유지 부당 매립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요청	해당 토지중 89평만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이미 보상되었고, 나머지 토지는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않고, 현재 답으로 확인되어 민원 종결 함	박종풍	완료 (심의종결)
45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폐수처리시설 부담금 개선 요청	-	김진환	진행중
46	담당부서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공장설립 준공 허가 불만 및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준공도면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과 비교한 결과, 부지면적 및 건축물의 연면적이 심의받은 계획보다 10%이상 증가되는경우"에 해당되지 않 고 당초 심의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도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조사처리기간 중 공장 부분등록 및 건축물임시사용이 승인되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 게 되었으므로 민원 해소됨	김시관	완료 (심의해소)
47	건축허가 조건의 부당함 호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축허가에 따른 조건 중 착공 전 사도개설자와 점용 및 굴착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동의서를 제출하는 조건은 적법하여 종결 처리함	조중익	완료 (심의종결)
48	시니어클럽 직책수당 미지급 부당	화성시 시니어클럽에서 팀장4명 중 2명에게만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민원 종결함	김시관	완료 (심의종결)
49	농지불법 원상복구 계고 통보 부당함 호소	-	김진환	진행중

연번	민원요지	처리결과	주 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50	개발제한구역 내 지적 경계선 조정 요청	봉담읍 상리 ○○○-○번지(332m)에 대하여 1977.1.31.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인 1976.12.4.이후인 1977.1.31.부터 1977.12.10. 사이에 임목을 벌채한 후 과수목을 식재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달라진 토지는 지목변경을 없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내 처리 지침”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43(2017.6.16.)에 따라 피신청인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중익	완료 (심의종결)
51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지연 불만	도로과 및 건설과 확인결과, 해당부지는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어 2019년 1월에 감정평가를 거쳐 2월경 보상금 지급예정으로 민원 해소됨	박종풍	완료 (심의해소)
52	태양광(전기발전사업) 설치 허가 적법성 검토 요청	-	김시관	진행중
53	개발행위허가 변경(산지전용변경)시 보완 요청 부당	-	김진환	진행중

3. 기타 민원처리 현황 (이첩·각하·상담처리 등)

(1) 이첩처리 민원 현황

연번	민원제목	처리사항	담당부서
1	횡단보도 설치 요청	이첩	대중교통과
2	좌회전 신호등 설치 요청	이첩	교통정책과
3	생활쓰레기 수거 요청	이첩	자원순환과
4	공원 내 놀이터 정비 요청	이첩	공원과
5	현황도로 폐쇄 요청	이첩	건축과
6	어울림 복지관 과장의 사과 요청	이첩	복지정책과
7	버스 정류장 설치 건의	이첩	대중교통과
8	송산그린시티 입주에 따른 불편사항 건의	이첩	건축과 자원순환과
9	동탄2 신도시 상가 준공의 적정 여부	이첩	도시건축과
10	동탄중앙 이음터 도서관 주차장 불편사항 개선 요구	이첩	교육협력과
11	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거권 피해 방지 요청	이첩	한국도로공사
12	동탄2 교통문제 개선 대책	이첩	대중교통과
13	버스 증차 요청	이첩	대중교통과
14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 문의	이첩	자원순환과
15	동탄~서울행 버스 증차 요구	이첩	대중교통과

연번	민원제목	처리사항	담당부서
16	광역버스 배차간격 조정 요구	이첩	대중교통과
17	버스 증차 요구	이첩	대중교통과
18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이첩	건설교통과
19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이주자택지 주차장 분양 문의	이첩	교통정책과
20	광역 M버스 증차 요청	이첩	대중교통과
21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청	이첩	도로과
22	화성시 군공항 이전 홍보 광고 불만 제기	이첩	군공항이전대 응답당관
23	매송 도시계획도로 노선 변경 요청	이첩	도로과
24	배수관 막힘 제거 요청	이첩	비봉면
25	동탄2 신도시 광역버스 증차 문의	이첩	대중교통과
26	동탄2 지하차도의 조속한 개통 요청	이첩	LH 동탄사업본부
27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 신고	이첩	자원순환과
28	M4108 버스 배차간격 조정 요청	이첩	대중교통과
29	주정차위반 알림 서비스 시스템 개선 요청	이첩	대중교통과
30	쓰레기 수거시 주변 정리 요청	이첩	자원순환과
31	개 짖는 소리 피해 민원	이첩	축산과
32	버스 증차 요청	이첩	대중교통과
33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요청	이첩	대중교통과
34	민원 발급 담당자의 불친절한 태도 불만	이첩	병점동
35	직원 업무처리 불만	이첩	서신면
36	공장설립승인 및 성토 관련 질의	이첩	허가민원1과

연번	민원제목	처리사항	담당부서
37	가로등 설치 요청	이첩	건설교통과
38	아파트 준공 관련 확실한 품질검수 요청	이첩	주택과
39	좌석버스(8155) 정차 요청	이첩	대중교통과
40	아파트 준공 관련 확실한 품질검수 요청	이첩	주택과
41	버스 배차 간격 조정 요청	이첩	대중교통과
42	버스 증차 요청	이첩	대중교통과
43	마을회관(경로당) 조기 건립 요청	이첩	노인복지과
44	버스 배차간격 조정 요청	이첩	대중교통과
45	동탄2 공장(지식산업센터) 준공공사 연장 요청	이첩	건축과
46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보상 요청	이첩	환경지도과
47	공사현장 피해 구제 요청	이첩	환경지도과
48	동탄2 반도유보라 교통불편대책 요청	이첩	대중교통과
49	동탄역 이용 마을버스 노선 신설 요청	이첩	대중교통과
50	버스노선 교통정체 급증 확인 요청	이첩	대중교통과
51	반도건설에 대한 감사요구 및 피해보상 조치	이첩	동탄 건축산업과
52	적시 제설작업 시행 요청	이첩	도로과
53	버스 증차 요청	이첩	대중교통과

(2) 각하처리 민원 현황

연번	민원제목	처리사항	각하사유
1	여울림 복지관 과장의 사과 요청	각하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직무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으로 각하 처리함
2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비공개 사유 요청	각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 진행중인 사항으로 각하 처리함
3	도로점용 공동사용승인에 따른 문제점 제기	각하	사인 간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각하 처리함
4	국화도 이장님 친절 감사 표시	각하	사인 간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각하 처리함
5	43번 국도 성혜원 사거리 준치 및 대학로 조성	각하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아 각하 처리함
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부당	각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 진행중인 사항으로 각하 처리함
7	반월동 게이트볼 분회 정상화 요청	각하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직무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으로 각하 처리함

(3) 접수 외 상담처리 현황

연번	민원요지	처리유형	내 용
1	향남읍 구문천리 도로확포장 관련 보상 문의	상담안내	도로과 연계 처리
2	사우나 위생지도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이의 제기	상담안내	산업위생과 연계 처리
3	개인택시 양수 조건 문의	상담안내	대중교통과 연계 처리
4	주택개량지원사업 선정 대상 문의	상담안내	주택과 연계 처리
5	개발부담금 체납금 징수 불만 제기	상담해소	토지정보과 연계 처리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요구	상담안내	도시정책과 연계 처리
7	주위토지 통행권 관련 상담	상담해소	도로과 연계 처리
8	토지매매로 인한 고층 및 건축허가 관련 문의	상담안내	건축과 연계 처리
9	토지측량비 할인규정 미적용 문의	상담안내	국토정보공사 소관사항임을 안내
10	건축현장 비산먼지 및 주변 정리 요청	상담해소	건축과 연계 처리
11	공장용지 개발관련 상담	상담안내	허가민원3과 연계 처리
12	목장용지 개발 가능여부 상담	상담해소	수질관리과 연계 처리
13	분양 사기 억울함 상담	상담안내	허가민원3과 연계 처리
14	한전 지중화 공사 관련 문의	상담안내	한국전력공사로 안내
15	농포포장공사 시 사유지 침해 관련 상담	상담안내	남양읍 연계 처리
16	닭(양계) 보상금 관련 불만 상담	상담안내	축산과 연계 처리
17	도로점용 사용료 문의	상담안내	도로과 연계 처리
18	구거지 유실수 임의벌채 유감 문의	상담안내	건설과 연계 처리
19	압류해제 요청	상담안내	징수와 연계 처리
20	건축허가(증축)가 적법여부 상담	상담안내	건축과 연계처리
21	비리제보 목인 공무원 고발 문의	상담안내	자체 상담 처리
22	건축허가 적법절차 처리 여부 문의	상담안내	건축과 연계 처리
23	재산세 증과 관련 불만 상담	상담안내	산업위생과 연계 처리
24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상담	상담안내	건축과 연계 처리
25	귀농자금 관련 지원사업 상담	상담안내	자체 상담 처리

연번	민원요지	처리유형	내 용
26	도로점용허가(폐도) 가능 여부	상담안내	도로과 연계 처리
27	오수관련 문의	상담안내	하수과 연계 처리
28	그린벨트내 성토작업 문의	상담안내	도시정책과 연계 처리
29	행정심판 절차 상담	상담안내	산업위생과 연계 처리
30	도로개설 문의	상담안내	허가민원1과 연계 처리
31	나무 고아원 사업 제안 문의	상담해소	산림과 연계 처리
32	개발업자가 분양한 토지 취득 관련 상담	상담안내	허가민원1과 연계 처리
33	상가 입간판 철거 문의	상담안내	남양읍
34	도로 보상 이력 확인 문의	상담안내	건설과 연계 처리
35	건물 임대 관련 문의	상담안내	주택과 연계 처리
36	정부지원금(복지) 혜택 문의	상담안내	복지정책과 연계 처리
37	사유지에 하수관로 매설 문의	상담안내	허가민원2과 연계 처리
38	건축허가기간 연장 문의	상담안내	도시건축과 연계 처리
39	공장부지 조성시 재심의 의견 문의	상담안내	허가민원1과 연계 처리
40	배수로 정비 요청	상담안내	장안면 연계 처리
41	소하천정비사업 관련 보상금 문의	상담안내	건설과 연계 처리
42	충전소 허가 취소 문의	상담안내	신재생에너지과, 도시정책과 연계 처리
43	건축 공사 현장 비산 먼지 문의	상담안내	환경지도과 연계 처리
44	압류 해제 문의	상담안내	징수와 연계 처리
45	교차로 내 그늘막 설치 요청	상담안내	대중교통과 연계 처리
46	개발행위허가 취소 관련 상담	상담안내	허가민원1과 연계 처리
47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	상담안내	토지정보과 연계 처리
48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문의	상담안내	도시정책과 연계 처리
49	무봉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	상담안내	도로과 연계 처리
50	동탄2 신도시 내 야구장 건설 문의	상담안내	체육진흥과 연계 처리
5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문의	상담안내	복지정책과 연계 처리

연번	민원요지	처리유형	내 용
52	도로점용허가 문의	상담안내	남양읍 연계 처리
53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 문의	상담안내	자원순환과 연계 처리
54	산업단지 내 주차장 조성 문의	상담해소	건축과 연계 처리
55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관련 문의	상담안내	건축과 연계 처리
56	긴급복지(생계,주거)사업 문의	상담해소	복지정책과 연계 처리
57	농지 임대차 관련 상담	상담안내	도시정책과 연계 처리
58	건물준공 중단 해결 상담	상담안내	건축과 연계 처리
59	부당한 압류 해제 요구	상담해소	징수과 연계 처리
60	개발행위준공 반려처분 부당	상담안내	허가민원2과 연계 처리
61	잔여지 매수 요청	상담안내	건설과 연계 처리
62	화랑진성 문화재 발굴 보상 문의	상담해소	문화유산과 연계 처리
63	도시계획도로 사업 진행 문의	상담해소	도로과 연계 처리
64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문의	상담해소	인적자원과 연계 처리
65	서해안 복선전철 공사 문의	상담안내	대중교통과 연계 처리
66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신청 상담	상담안내	도시정책과 연계 처리
67	공사장 비산먼지 문의	상담안내	환경지도과 연계 처리
68	도로 보수 요청	상담안내	도로과 연계 처리
69	직원 민원처리 불만	상담안내	징수과 연계 처리
70	도로 환경 개선 요청	상담안내	도로과 연계 처리
71	일자리(구직) 문의	상담안내	일자리 정책과 연계 처리
72	생활쓰레기 수거 요청	상담안내	자원순환과 연계 처리
73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당	상담안내	장애인복지과 연계 처리
74	압류처리 부당 문의	상담안내	징수과 연계 처리

연번	민원요지	처리유형	내 용
75	공장 진입로 포장 요청	상담안내	장애인복지과 연계 처리
76	국유지 목적외 사용승인 문의	상담안내	건설과 연계 처리
77	농지 취득세 관련 상담	상담해소	세정2과 연계 처리
78	도시계획도로 편입 관련 보상 문의	상담안내	건설과 연계 처리
79	경매관련 매각금액 문의	상담해소	세정1과 연계 처리
80	방음벽, 차폐막 설치 상담	상담안내	허가민원2과 연계 처리
81	채권회수 방법 상담	상담해소	자체 상담 처리
82	소비자 위약금 해제 문의	상담안내	자체 상담 처리
83	개발행위(산지전용)변경 허가 문의	상담안내	허가민원2과 연계 처리
84	상수도관 매설 문의	상담안내	맑은물시설과 연계 처리
85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부당 문의	상담안내	허가민원3과 연계 처리
86	개발행위허가 관련 문의	상담안내	수질관리과 연계 처리

V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

V.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

1. 개발제한구역 원상복구명령 부당

① 민원요지

주관 읍무즈만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무단형질변경(성토) 한 것에 대하여 시정완료 통지를 받았는데 다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은 부당함
김 시 관	

② 조사내용

□ 신청 취지

화성시 봉담읍 내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에 무단형질변경(성토) 한 것에 대하여 2017. 11. 2. 시정완료통지를 받았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사유로 다시 2018. 7월 말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은 부당함.

□ 피신청인의 주장

(1) 시민읍무즈만 최초 질의에 대한 답변

2017. 11. 2. 원상복구 완료되었다고 종결처리하였으나, 인근의 ○○○ 관계자가 반입된 토사량보다 반출된 토사량이 적어 불법행위(무단성토)가 시정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불법행위를 합법화 하는 것은 기존의 법질서와 배치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시정명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시민읍무즈만 시정권고에 대한 주장

2018. 9. 17. 화성시시민읍무즈만 전원합의로 “2017. 11. 2.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성토 및 개전행위가 자진 시정되었다고 종결처리한 후 토지의 형상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음에도 2018. 7. 3. 다시 2018. 7. 30.까지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 한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간과한 것이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도 없는 바, 신청인의 시정조치를 피신청인이 확인하여 종결된 것으로 처리한 이상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므로 2018. 7. 3. 도시정책과-11704 문서로 ‘7.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요지의 시정권고를 한 데 대하여

- 2018. 10. 18. 옴부즈만의 시정권고를 불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신청인은 2017. 11. 2. 시정완료 통보한 것은 지목상 답으로의 사용을 전제로 종결처리한 것이며, 2018.7.3. 시정명령은 원래 지목에 맞게 답으로 이용하거나 전으로 형질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밭농사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이 건 토지를 2005. 11. 7.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3. 25. 무단형질 변경으로 시정명령 받을 당시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2018년에도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고 취득당시의 지목(답)은 2018. 9. 17.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다.
- 2017. 3. 25. ○○○○ 관계자가 신청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형질변경(무단성토)하였다고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3. 30. 현지답사하여 무단성토 된 것을 확인한 후 2017. 4. 3. 신청인에게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도시정책과-6252) 하였고, 2017. 5. 1. 시정촉구명령(도시정책과-8199) 하였으며, 2017. 6. 5.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 신청인은 2017. 7. 13. 현재 고구마, 고추, 들깨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작물 수확 후 자진 원상복구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17. 7. 17. 이행기간을 같은 해 10. 30.까지로 연장조치(도시정책과-13158) 하였다.
-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단속담당자는 2017. 9. 25. 변경되었다.
- 신청인은 2017. 10. 27.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소재 주식회사 ○(대표 이○○)과의 거래명세서와 원상회복공사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자진 시정완료하였다고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2017. 11. 2. 이 건 토지를 현지확인하여 원상복구 완료되었음을 확인(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단서를 달아) 한 후 「불법행위 관리대장」에도 종결된 것으로 기록하고 ‘도시정책과-6252, 8199, 13158 등 3개 문서’로 시행한 시정명령 등에 대하여 자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이 건 종결처리하였다.
- 2018. 3. 6.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단속담당자가 2017. 9. 25. 보직변경 되기 전의 담당자로 다시 바뀌었다.

- 피신청인은 이 건 종결처리한지 7개월 이상이 지난 2018. 6. 22. ○○○○ 관계자가 전화로 불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 현지확인하여 일부 불법행위가 원상복구되지 않아 다시 시정명령함이 타당하다고 출장복명한 후, 2018. 7. 3. 미복구한 무단토지형질변경 1,180㎡를 원상복구하라고 도시정책과-11704 문서로 다시 시정명령 하였다.
- 신청인은 2018. 7. 11.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시민옴부즈만은 “피신청인이 2017. 11. 2. 현장에 출장확인하여 시정조치가 완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공문서로 ‘시정완료통보’ 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고 공익이나 사익에 크게 위배되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취소” 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 위 시정권고에 대하여 2018. 10. 18. 피신청인은 불수용 의사를 표명하면서, 2017. 11. 2. 시정완료 통보로 종결처리하였으나, 지목(畓)대로 이용하지 않고 신고도 없이 밭농사로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하였다고 주장한다.

③ 조사결과

□ 판 단

- 2017. 11. 2. 이 사건 토지의 무단성토행위가 시정되었다고 종결처리한 후 2018. 9. 17. 현재 까지 이 사건 토지의 형상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로 정의하면서 답(畓)인 농지에도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실제 답(畓)인 지목에 밭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하여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

□ 결 론 (시정권고)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피신청인의 주장 그리고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서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행위는 절토, 성토 등의 형질변경행위이지 식재작물의 종류가 아니며, 답(畓)에 밭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인 것은 아니다.

형질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종결처리한 후, 밭작물을 식재하였다고 개발제한구역법을 적용하여 시정 명령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다시 한 번 도시정책과-11704 문서로 ‘7. 3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 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제과점 식빵 유통기한 표기오류로 인한 과징금 부과 부당

① 민원요지

주관 옴부즈만	제과점 식빵 유통기한 표기오류로 인한 적발로 과징금 부과는 너무
조 종 의	가혹하니 선처 바람

② 조사내용

□ 신청 취지

- 가. 위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요플레케익” 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진열대에 진열 중인 사실에 대하여, 유통기한은 아르바이트생이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진열대에서 치우지 못하였다는 진술이고,
- 나. 이 사건 적발 제품인 “요플레케익” 은 유통기한이 6일인데 3일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아르바이트 학생이 기한 변경 없이 라벨을 부착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6일인 제품을 직원의 단순 과실로 3일로 표기하였을 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아니다. 라고 주장.
- 다. 해당제품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배탈 등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바, 유통기한이 1일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라. 본 업소는 2017.12.05. 영업개시일 부터 현재까지 위생팀 등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으며 한번의 실수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5,850,000원을 부과처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정처분이며, 본 업소는 유통기한 전에 모든 제품을 푸드뱅크에 보내는 등 제품관리에 성실히 임해 왔으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안이고,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일이니 정상참작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위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에 의한 “제과점영업” 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9호)에 규정에 의한 유통기한 표시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영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표시

사항별 세부 표시기준 1.식품 라.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1) 규정에 따라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변경하여서도 아니되는 업소에 해당됨.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통기한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에 영업자가 임의로 설정한 유통기한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다만 판매시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질 뿐이다. 이와 같이 이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업소에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된 제품의 본래 유통기한이 3일이 아닌 6일이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었다는 사실 즉 강행법규인 식품위생법상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의 주의의무 태만에 있다.

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는 종사원이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교육과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식품접객업 종업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사건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열대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미필적 고의와 과실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으로서 경계가 모호하여 단순히 위반자가 과실이었다고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이를 인용할 수 없고, 이사건 이전의 영업실태, 사건의 일반적인 정황,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던 장소, 방법, 단속 이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종업원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기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보여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종업원의 과실이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의 일반원칙(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처분이 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이 사건 영업자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없었던 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 3개에 불과하였던 점, 영업정지처분에 의해 소비자의 신뢰상실 등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15일 같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것임

□ 사실관계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신청인은 2017.12.05.부터 화성시 진안동 ○○농협하나로마트 내(31.2㎡)에서 제과점영업 『(주)○○○○○』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업소에서 2018.01.15. 화성시 동부출장소 산업위생과 식품위생감시원 담당자 2명은 공익신고 사안의 사실확인을 위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진열대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중인 빵류 중 유통기한 1일이 경과한 제품(요플레케익 3개)을 발견하고 단속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8.01.18. 신청인에게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2018.03.09. 과징금부과처분을 원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8.04.02.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5,850,000원을 부과하였다..

□ 법률관계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별표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제89조〔별표23〕

- 나.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면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나 영업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또한 일반기준 15호 마목에서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처분의 1/2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별표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2017년도 연매출액이 282,253,919원으로 과징금 기준8등급을 적용하여 1일 39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③ 조사결과

□ 판 단

가. 이 사건의 위법·부당여부

신청인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제정 취지에 따라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 및 진열하여 판매한 바, 피신청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신청인이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유통기한이 1일 경과 한 점 등을 고려 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록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9호)에 규정에 의한 유통기한 표시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과점에서 임의로 유통기한을 정하여 라벨지를 부착하여 1일이 경과한 사안은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1/2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라. 행정심판 재결례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2014-00196(2014.07.28.)제과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는 제과점 영업 진열대에서 유통기한 54분이 경과한 우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으로 변경토록 한 재결례가 있고,

마. 또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1 일반기준 15호 마목에서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처분의 1/2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의성을 주장만 할 뿐 다른 입증 할 증빙을 발견 할 수 없음으로 신청인에게 불리한 최대15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판단됩니다.

□ 결 론 (의견표명)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피 신청인의 주장 그리고 사실 및 법률관계 등을 살피건대, 신청인에게 15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5,850,000원의 행정처분은 신청인에게 다소 가혹한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의 규정에 따라 1/2 범위 내에서 경감 처분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3. 전곡산업단지 오폐수 부담금 처리비용 부당청구분 반환 요청

① 민원요지

주관 옴부즈만	서신면 전곡리 전곡 해양산업단지 내 오폐수 부담금 부당청구분
박 종 풍	반환 요청

② 조사내용

□ 신청취지

전곡산업단지에 입주한 (주)○○은 물 함유량이 95% 상당인 수용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상수도 물을 사용하면서, 폐수는 전량 위탁처리하고, 종업원 9명 해당 오수만 배출하는데, 상수도 사용량의 90%에 해당하는 오·폐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처리 비용을 산정,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요망.

□ 피신청인의 주장

관련조례인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 사업자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사업자는 용수 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유량계 미설치 기간 중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부과함.

오폐수 처리 부담금 부과 단가가 인근 시설에 비해 높게 부과되고 있어, ‘18년 4월부터 4,000원/톤→3,500원/톤으로 낮춰 부과하고 있음.

향후 발생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신청인이 고충 민원 제기 후, 2018.3.28. 위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 옴부즈만실에서 해결방안 논의 관련회의 결과(시민 옴부즈만, 사업팀장, 업무 담당), 처리비 과다 문제제기 후에 방류수 유량계를 설치했고, 방류수는 설치 전이나 설치 후나 일정할 것이기 때문에 설치 후 3개월간 방류량을 측정하여 그 중 최대 값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민원을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함.

□ 사실 및 법률관계

화성도시공사에서 관련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유량계 미설치 기간 중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량의 90%에 해당하는 오폐수가 유출되는 것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6개월분, 계 3,432,400원)을 오폐수처리 부담금으로 부과한 것이 일단 법령상으로 잘못된 것은 없어 보임.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 업체의 생산제품은 수분함량이 95%의 수용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생산을 많이 하면, 상수도 사용량만 늘어나고, 폐수는 전량 외부 위탁처리하고 있어, 실제로 방류수도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데도 상수도 사용량으로 부과됨.

실제로 '18년2월13일 배수구에 유량계 설치하고 실제 배출된 오폐수량을 측정하여 부담금을 산정한 결과, 과거 유입량 기준으로 월 109만원 내지 145만원 상당 산정, 부과되던 오폐수 부담금이 월 1만4,000원 내지 3만3천600원으로 줄어 들어 과거 부과액의 0.9%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상수도 사용량의 95%이상이 제품으로 사용됨이 입증되고, 실제 오폐수 발생량도 기 부과액의 0.9%에 불과한 사실이 입증되어, 유량계 설치 전에도 그랬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이를 달리 반증할 자료도 없기 때문에 기 부과한 폐수처리부담금을 비록 법령의 기준에 따라 부과했다 하더라도 실제적 진실과 달리 과다 부과된 것으로 보임.

③ 조사결과

□ 판 단

비록 법령에 근거해서 부과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제보다 과다 부과한 사실이 입증되었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 혁파를 주장하는 무사안일 유형인 법규 빙자형 부조리로서 소극행정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함.

또한, 위 문제 해결을 위해 '18년 3월28일 시민 옴부즈만실에서 화성도시공사 관련 팀장, 담당 및 시민 옴부즈만 회의 결과, 그 결론이 배수구에 유량계를 설치한 후, 3개월(4월~6월)간 재 측정하여, 그 중 최고 배출량을 기준으로 오폐수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였든 바, 민원인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공공기관으로서 신의성실 원칙 및 그 회의 결과에 따라, 유량계 설치 후 3개월간 부과된 금액 중 최고 부과액 33,600원(나머지 2월은 20,492원, 14,350원이 각각 부과 됨)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33,600원 × 6개월=201,600원)을 6개월간 기 부과된 금액(계, 3,432,400원)에서 차감한 나머지 금액(3,432,400원-201,600원=3,230,800원)은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결 론(의견표명)

위와 같이 관계 법령상 오폐수부담금 부과 기준과 사실관계 그리고 실제로 방류구에 설치된 유량계 설치 후 측정 결과 등을 살펴 볼 때 화성도시공사의 오폐수부담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실제적 진실에 더 부합됨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할 자료도 없음으로 화성시 시민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과다 부과된 부과금 계 3,230,800원은 환불하도록 의견을 표명함

4. 개발행위준공 신청 반려처분 취소 요청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산업단지 내 공장 임시사용승인은 득하였으나 개발행위준공 허가 신청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으니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람
김 시 관	

② 조사내용

□ 신청 취지

신청인은 우정읍 호곡리 ○○○-○○,■■■산업단지 내 공장의 임시사용승인은 득하였으나 개발행위준공이 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음. 도로부지 지분권자 전원의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하지만 (주)■■■□○■□가 사용승낙을 해 주지 않아 개발행위준공허가 신청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람.

□ 피신청인의 주장

- 이건 민원은 개발행위협의(공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협의된 사항으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준공신청을 하였으나 기반시설인 도로가 준공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부지 준공에 대한 보완(기반시설인 도로준공 또는 도로로 허가난 부지소유주의 승낙서 첨부)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임.
- 이건 부지의 기반시설인 진출입도로는 소유주간 분쟁지역으로 개발행위 도로 준공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소유주의 사용승낙도 첨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회 보완 후 미보완시 반려처리할 계획임
- 반려처리시 행정심판 등 안내할 예정이며, 미 보완된 사항을 보완하여 재접수시 준공처리 행정절차를 재개할 예정임

□ 사실관계

- ■■■개발, 호곡공단 진출입로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
2008. 7. 17. 화성시 남양동 ○○○-○○번지(○○빌딩 ○호) 소재 (주)○○○○(대표이사 김○○)은 2008. 7. 17. 피신청인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번지 외 64필지 159,807㎡ 중 29,577㎡를 진출입로 부지조성 목적으로 도로로 개발하는 개발행위허가(허가번호 제2008-1600호)를 받았고, 2010. 8. 27.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도로부지 면적이 9㎡ 증가하여 228-5번지 외 65필지 108,635㎡ 중 29,586㎡를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허가(허가번호 제2010-1912호)를 받았다.

○ 진출입로 부지조성 개발행위 허가조건

- 2008. 7. 17. 허가번호 제2008-1600호의 허가조건 제8호는 “공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번분할 및 지목변경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준공검사 신청시 도로부지에 대하여 우리 시에 무상귀속서류를 첨부하여 준공신청하여야 합니다” 이고
- 2010. 8. 27. 허가번호 제2010-1912호의 허가조건 제6호는 “허가지 내에 현황도로 및 도로부지(29,586㎡)는 공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번 분할 및 지목변경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본 사업의 도로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무상귀속대상인 공공시설로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도로부지에 대하여 우리 시에 무상기부 채납하여야 합니다.” 이며,
제10호는 “건축계획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신고) 등에 의하여 도로지정 고시가 안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건축허가(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다.

○ ■■■개발, 창고부지 조성 개발행위허가

위 경기개발은 2008. 7. 17. 위 진출입로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동시에 창고부지 조성 목적으로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번지 외 14필지 28,811㎡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허가번호 2008-1603호)를 받았다.

○ 포스로■■■으로 개발행위허가 명의 및 허가목적 변경

2010. 2. 8.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번지 소재 (주)포○○○○(대표이사 김○○)은 위 경기개발이 받은 창고부지조성 목적의 15필지 중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4필지(■■■-■■■, ■■■-■■■, -■■■, -■■■-■■■) 2,286㎡에 대하여 명의변경과 함께 허가목적도 공장부지 조성으로 변경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득하였다.(허가번호 2010-32호)

○ 도로 지정·공고

2012. 5. 25. 피신청인은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번지 외 6필지에 대한 건축허가(건축주 박■■■)와 관련하여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번지와 ○○○-○번지에 길이 95m 너비 20m 면적 2,327㎡의 도로를 지정 공고(화성시 공고 제2012-1265호)하였고, 2018. 11월 현재 도로가 준공되지는 않았으나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다. 이 도로는 신청인의 공장부지 진출입 및 개발행위준공검사에 필요한 도로이다.(이하 ‘이 건 도로’ 라 한다)

○ 김○○에 임의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및 명의변경

2015. 8. 13. ○○○○ 소유의 토지가 안산시 단원구 ○○○, ○○○동 ○○○호 거주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토지분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지의 면적은 2,286㎡로 변동없으나 이건 부지의 지번이 ○○○-○, -○○, -○○ -○○로 각각 변경되었으며(이하 ‘이 건 공장부지’라고 한다.), 2015. 12. 15. 개발행위허가자 명의를 (주)■■■■에서 위 ○○○으로 변경되었다.(허가번호 2015-5329호)

○ ■■■개발 해산

■■■개발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하지 않아 2015. 12. 1.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같은 해 12. 7. 해산으로 등기 되었다.

○ ■■■테크로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2016. 1. 27. 이 건 공장부지의 개발행위허가자 명의를 화성시 안녕남로 ○번길○○16번지 소재 (주)■■테크(대표이사 김○○)로 변경되었다.(허가번호2016-425호)

○ (주)■■○○○○의 지분권 주장 민원제기

한편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 소재 (주)■■■■(대표이사 김○○)는 2016. 12. 14.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그 내용은 ■■■■는 피신청인이 지정공고한 도로의 지분권자인데, ①지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로로 지정공고되었고, ②재산상 피해 없도록 추가로 도로로 지정공고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③도로로의 지목변경을 원하지 않고 있고 ④호곡산업단지 내의 모든 허가는 이해관계인인 ■■■■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으며 ⑤현재 진행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 동의 없이는 준공 및 사용승인이 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지분권자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는 이 건 도로부지 소유권의 305,872분의 15,132 지분(약4.9%)을 소유하고 있다.

○ 이 건 민원을 읍부즈만이 검토하던 중 2018. 10. 2. 신청인은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8. 10. 16. 및 같은 해 10. 29. “개발행위 준공에 따른 도로부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 하도록 보완통보하였고, 신청인은 다른 지분권자의 사용승낙은 받았으나 ■■■■만 무리하게 요구하여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다고 소명하며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 피신청인은 2018. 11. 7. 지분권자 전원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개발행위준공 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 관계법령

-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에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 건축법 제4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28조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를 두어 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보존에 대하여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조사결과

□ 판 단

- 이 건 도로의 성격

이 건 도로는 2012. 5. 25. 「화성시 공고 제2012-1265호」로 피신청인이 도로로 지정·공고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하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할 수 있고, 공장건축물의 규모와 공장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보아도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법원판례 2003두6382 참조)

이 건 도로부지는 2010. 8. 27. 개발행위허가시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피신청인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여야 할 대상이다.”라는 허가 조건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재산이다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민법 제265조에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반수 이상 대다수 지분의 공유자가 사용승낙을 하였다면 소수지분 공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소수 지분권자의 재산권 분쟁은 민사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대법원판례 2000다33638, 2002다9738 참조)

□ 결 론 (의견표명)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피신청인의 주장 그리고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및 관련 판례 등을 살피건대, 이 건 도로부지의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 건 공장부지를 준공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2018. 11. 7. 개발행위허가 준공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5.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요청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신청했는데 현황상 “도로”라 발급을 안해 주고 있어 시정 요구
조 중 익	

② 조사내용

□ 신청취지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번지(전 185㎡)토지를 매입하려고 마도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신청했는데 현황상 “도로”라 하여 발급을 안 해주고 있어 시정요구

□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위 지번에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해서 해당지번이 전(밭)이기 때문에 일반 법인으로 취득하고자 하여 일반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한바 있고,
- 나.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다. 민원제기 이후 마도면에서 2018.01.19. 개인자격으로 농지취득자격을 신청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음.

□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번지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래은행에 사용하기 위해 현재 현황 상 도로인 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번지(전 185㎡)토지를 매입하려고 마도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마도면에서 해당 농지가 현황도로라 하여 발급을 해 주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마도면 담당자에 의하면 민원인이 신청당시 일반법인으로 신청한다고 하여 일반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한 말만 믿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음.

나.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 신청인은 위 농지에 대하여 2018.01.18. 마도면에 일반법인이 아닌 개인 신청으로 2018. 1.19.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였음.

③ 조사결과

□ 판단 및 결론(심의해소)

마도면에서 해당 농지가 현황 상 도로라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불허한 사안이 아니고, 신청인이 일반법인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요청하여 마도면 담당자가 일반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한 과정에서 신청인이 잘못알고 민원을 제기한 사안으로 민원제기이후 2018.01.19.개인자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해결되었으므로 본 민원을 종결함

6. 불법축조물로 인한 도로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 시정 요구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인근 불법 축조물로 인한 도로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
박 종 풍	니 시정 요청

② 조사내용

□ 신청 취지

향남읍 송곡리 ○○○번지 인근 원룸 소유자의 불법 축조물로 인해 공장과 마을주민의 도로 이용시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시정해 주기 바람

□ 피신청인의 주장

향남읍 송곡리 ○○○-○번지 일원 국유지 송곡리 ○○번지를 무단점유(보강토 옹벽 축조)함으로 인하여 차량 소통 및 시야확보가 어렵다는 민원에 대하여 시야확보를 위해 보강토 옹벽은 차량 소통 및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 조치토록 하였고, 차량 소통 및 시야확보에 지장 없도록 옹벽 등 불법축조물을 이설조치하고, 431번지 구거 98㎡는 사용허가 하는 방식으로 처리 함.

□ 사실관계

화성시 향남읍 송곡리 ○○○번지의 2필지상에 보강토 옹벽 5.53㎡를 무단축조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8.1.11.철거 시정명령 2회 발부 등 및 동년 2.12.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발송. 2018.5.23. 무단점유(보강토 옹벽)로 인하여 차량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차량소통 및 시야 지장이 없도록 철거 이설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를 사용 허가하여 차량소통 및 시야확보 지장 없이 적법 종결처리.

③ 조사결과

□ 판 단

해당번지 구거 98제곱미터는 사용허가 방식으로 차량 소통 및 시야확보에 지장 없도록 조치되었으므로 본 민원은 종결처리.

□ 결 론 (심의해소)

불법축조물 소멸 및 시야 확보, 교통 소통 방안 확보되어 민원종결(민원해소) 함

7. 농수로에 도로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으므로 원상복구 요청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송산면 삼존리 〇〇〇-〇번지상 농수로에 도로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으니
김 진 환	농수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요구함

② 조사내용

□ 신청 취지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〇〇〇-〇번지상 농수로에 도로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으므로 농수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요구함.

□ 피신청인의 주장

화성시(건설과 행정재산 관리팀)허가 사항을 살펴 본바,
송산면 삼존리 〇〇〇번지(농림축산식품부:구거) 농업용 부지 진출입로(콘크리트 포장 A=129m²)를 2016.11.9.~2019.12.31.기간으로 허가를 김〇〇이 받음,
위 삼존리 1218번지국유지는 송산면 삼존리 〇〇〇번지(분할지번 〇〇〇-〇번지) 농업용부지 진출입로 목적으로 허가된 사항이나 2018.3.23. 민원발생에 따라 2018.4.10. 현장 확인결과 허가 사항과 달리 시공한 사실을 확인 후 원상복구 요청 및 국유지 기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목적 및 수허가자)시 민원 사항에 대하여 검토 하에 조치할 계획임.
국유재산 허가지의 민원으로 해당과에(허가민원 1.2과장, 건축과장) 민원사항과 조건부 허가 미이행을 알림. 사용허가 취소 청문회 개최 통보,

- 청문개최 일시 및 장소 : 2018.12.21.(금)14:00, 화성시청 2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예산법무과팀장,국유재산사용허가담당자,행위자 등 (총3명)

□ 사실관계

가.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〇〇〇-〇번지 이 〇〇(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〇〇〇)는 위 316-〇번지 상에 단독주택 개발행위 변경에 따라 진출입로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삼존리 〇〇〇번지 농림축산식품부 구거)를 조건부로 받은 사항으로 2018.2.27.국유재산사용 허가변경 및 명의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과 같이 보완 하에 사용허가 받도록 하였음.

- 민원내용: 송산면 삼존리 〇〇〇-〇번지 일원 우수처리 피해방지 대책 요구.
- 보완사항 : 우수처리 계획변경(농수로 복개 철거 등)

- 나. 민원으로 국유지민원 발생사항을 2018.4.19. 해당과에(허가민원1.2과장,건축과장) 다음과 같이 알림(김○○, 삼존리 ○○○),
- 위 치 : 송산면 삼존리 ○○○번지(농림축산식품부,구거)
 - 내 용 : 민원 및 허가조건 미이행
 - 당초 국유지의 기존도로를 농업용부지 진출입로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하였으나 기 허가사항과 달리 시공(굴착)하여 이에 따른 원상복구 및 삼존리 ○○○-○번지의 배수처리 및 사면붕괴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요청하였고,
 - 민원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한 결과, 해당 지번의 목적 외 사용승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인 배수로에 옹벽 등 불법 시설물이 무단 설치된 후에 승인한 것은 적절치 못한 업무처리로 「농어촌정비 법」 제11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허가취소 등의 처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같은법 제118조(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한바 있음.

○ 사용허가 취소 청문회 개요

- 처 분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 당사자 : 김○○
- 청문개최일시 : 2018.12.21.(금)
- 취소사유 : 송산면 삼존리 ○○○번지(지목: 구거, 농림부 소관) 일원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접수하기 전 기존 용,배수로로 무단복개 및 도로개설 후 사용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판단되어 취소함.
- 청문회(2018.12.21.)개최 후 허가취소 통보(2019.01.03.)

재산의 표시			허가현황			비고
소재지	공부면적 (㎡)	지목	허가면적 (㎡)	허가목적	허가기간	
송산면 삼존리 ○○○	2,203.2	구거	129	농업용 부지 진출입로	2016.11.09.~ 2019.12.31.	농림축산식품부 (○○○번지 앞)

③ 조사결과

□ 판 단

- 화성시(건설과)에서 2018.2.27.사용허가 변경과 명의변경을 알린바 있으며 현지 방문을 (출장복명서 첨부) 통하여 민원인 소유 삼존리 ○○○-○번지 일원 우수처리 피해방지와 화성시 (건설과)의 보완사항인 우수처리 계획 변경(복개 수로 철거 등)을 요구한바 있고, 위 「농어촌정비법」 제118조(청문)에 의거 2018.12.21.(금)에 실시한 청문 실시 후 동법 제116조(허가취소 등)1항1호에 의거 허가취소 통보(2019.01.03.)와 원상복구에 이어 미 이행 시에는 동법 제130조(벌칙) 규정에 따른 고발 예정임을 안내 하였음.

□ 결 론(심의해소)

피 신청인은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2019.01.03. 허가취소 하였음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종결함

8.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요구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우정읍 매향리 〇〇〇-〇번지 외) 부과 취소 요구
강 성 구	

② 조사내용

□ 신청 취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우정읍 매향리 〇〇〇-〇번지 외) 부과 취소 요구

□ 피신청인의 주장

해당필지의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시정명령 행정조치 및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하였으며, 2016. 4.20. 원상복구(철거완료)하여 종결함.

□ 사실관계

담당부서(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우정읍 매향리 〇〇〇-〇번지 외 2필지 건물 제가동 제3층 301호)을 2016년 3월까지 철거하라고 하여 당시 3월까지는 불가능하여 건축과에 방문 문의한바 담당자는 출장이라 없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4월까지 한달 연장해서 철거해도 된다는 말을 믿고 2016년 4월초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이후 2016년 6월 이행강제금을 통보 받음.

- 2014.12.22. 1차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2,984,940원)
- 2015.12.03. 건축법위반 건축물 시정명령(면적 12.24㎡)
- 2016.03.09. 2년차 이행강제금 2,577,000원 부과(면적 37.08㎡)
- 2016.04.20.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철거완료)

③ 조사결과

□ 판 단

- 우정읍 매향리 ○○○-○번지 일원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담당부서에서 시정명령 행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하여 2016.04.20. 원상복구 하였지만 2년차 시정명령시 면적(12.24㎡)과 이행강제금 부과시 면적(37.08㎡)이 다른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시 늘어난 면적(24.84㎡)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과오납(금1,726,320원)이 발생됨
- 일부 과오납(금1,726,320원)에 대하여 결손처리하고 2년차 시정명령시 불법 면적(12.24㎡)에 대하여 부과(금850,680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결 론 (심의해소)

위와 같이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바 이행강제금을 잘못 부과한 면적(24.08㎡)분에 대해 1,726,320원은 결손조치하고, 불법면적(12.24㎡)에 대하여만 850,680원을 부과하였기에 이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종결 함.

9.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제기

① 민원요지

주관 옴부즈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
조 중 의	

② 조사내용

□ 신청 취지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번지(414㎡)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상담결과 건축신고필증을 받고 착공시점에 이행강제금이 면제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화성시 담당자는 건축 준공 이전까지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시정요구.

□ 피신청인의 주장

화성시 건축과에서는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번지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가. 1차 2016.10.13. 1차 이행강제금 4,430,400원을 부과,

나. 2차 2017.12.22. 2차 이행강제금 3,227,000원을 부과 사전통지(2년차)에 따라 연기허가(2018.5.31.까지)를 득한 후 2018.5.25.건축신고를 득하였으며,

다. 건축신고를 득한 이후 2차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2018.7.2. 경기도의 질의회신 결과

- 건축 관련법령에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나, 민법 규정 및 국토부의 위반건축물 구제방안으로 추인제도를 통해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행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추인 허가(신고) 하고 있고,

-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물이 단순히 허가 등의 절차만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위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였다면 위반건축물로 볼 수 없어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번지의 토지(414㎡)를 2015.5.14. ○○개발로부터 주택 건축에 필요한 전기, 수도, 옹벽, 주차공간 등 건축시공과 관련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매입
- 나. ○○개발에서 건축법을 위반하여 차고지(25.8㎡), 옹벽(5.58㎡)을 시공한 사항을 몰랐으며, 이후 2016.10.13. 1차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라 4,430,400원을 부과되어 납부하였고, 2017.12.22. 2차 3,227,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2년차)에 따라 2018.5.31. 까지 연기허가를 득한 후 2018.5.25.건축신고를 득하였음.

③ 조사결과

□ 판 단

신청인이 건축신고를 득한 후 2차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건축물이 단순히 허가 등의 절차만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신고)를 2018.5.25.득하였기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볼 수 없어 사전통지 한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결 론 (심의해소)

위와 같이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입장 및 확인, 사실관계 등을 살피건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연기허가 기간 중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볼 수 없어 2차 이행강제금이 부과하지 않기로 피신청인이 결정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종결 처리함

10. 잘못 부과된 납부세금 반환 요청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토지를 15년전 취득하였으나 공부와 현황 측량 차이 오류로 지금까지 납부한
박 중 풍	세금 반환요청

② 조사내용

□ 신청 취지

남양읍 안석리 ○○○-○번지 토지를 약 15년전 취득하였으나 공부와 현황측량차이(지적도) 오류로 약 80평이 남의 땅으로 판명되었기에 15년간 납부한 세금을 반환해 주기 바람

□ 피신청인의 주장

2018.9.12. 남양읍 안석리 ○○○-○번지 등록사항 정정(1,519㎡→1,254㎡, 265㎡ 감)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 제 58조에 의거 부과취소 및 같은 법 제 60조 및 제 64조에 의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산세를 환급해 줄 예정이라 함.

□ 사실관계

2015.1.15. 안석리 산○○-○와 ○○-○번지 가 265㎡ 겹쳐, 등록사항정정 성과도(경계,면적)에 ○○-○번지 1,519제곱미터를 1,254제곱미터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 통보를 대한지적공사로부터 받았으나, 2018.4.30.에서야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정정(경계 및 면적) 됨.

그로인해 공부오류로 인해 과다 부과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 지번 265㎡에 대한 재산세 계 94,827원을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 의해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조사결과

□ 판 단

피신청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부과된 안석리 ○○○-○번지 265㎡에 대한 재산세 계 94,827원을 2018년 10월경 환급할 예정이라고 함으로 종결 처리함이 타당.

□ 결 론 (심의해소)

과다부과된 재산세 중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 한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5년분 재산세 94,827원을 환급하기로 하여 민원 해소 됨.

11. 건축허가기간 연장 요청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진입로 확보 조건으로 당초 허가를 받고 진입로 확보 관계로 착공신고 기간이 도래되어 재연장을 요구함
김 진 환	

② 조사내용

□ 신청 취지

동탄면 중리 〇〇〇번지에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진입로확보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진입로 확보 관계로 착공신고 기간이 도래되어 재연장을 요구 하였으나 재연장이 되지 않아 청문회를 통하여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하여 민원을 제기함,

□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도로구역포함)에 공작물,물건 그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점용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나. 화성시 중동 366번지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시도 74호선 구간(중동 〇〇〇-〇번지, 〇〇〇-〇번지)은 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중동 〇〇〇-〇번지는 도로구역 외 지역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옴.

□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동탄면 중리 〇〇〇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음식점)허가(2016.5.2.)를 받고 허가지 진입도로를 갖추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받고 진출입을 하고자 경기도소유 폐천 부지를 162㎡를 매입하고자 신청 하였으나 29㎡가 도로구역으로 도로계획이 있어 현재 소규모환경영양평가진행(한강유역환경청) 중이며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 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나. 2015년 7월부터 추진해온 도로계획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신청인의 건축 착공 만기일(2018.9.20.)이 임박한 관계로 신청인은 화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시도 74호선 보행환경 개선사업(1구간)도로계획으로 1차 착공 연기일(2018.9.20.)이 늦어져 허가취소 불안감으로 화성시를 방문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으나, 화성시 중동(시도

74호선 보행환경개선사업 동탄2지구~만의사)1구간 사업이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되고,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2018.9.18.)고시됨으로써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음.

③ 조사결과

□ 판 단

피 신청인은 2015년 7월 관련기관협의를 시작으로 시도74호선 보행환경 개선사업(1구간)으로 화성시 중동 〇〇〇-〇번지 일원에 25억원 예산으로 950미터를 계획하여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018.9.18.)로 중동 〇〇〇-〇번지가 도로구역선 에 포함되어 신청인이 우려하고 있는 건축물 착공신고 연장 및 청문회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결 론 (심의해소)

화성시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시도 74호선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고시(2018.9.18.)됨에 따라 도로구역선이 확정되어 중동 〇〇〇-〇번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재신청 할 수 있으므로 민원이 해소됨

12. 건축물 설계변경에 따른 이의 제기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건축신고를 득하고 착공신고 한 후 건축중에 설계대로 건축하면 인근 가옥과 간격이 좁아 피해방지를 위해 건물위치를 약간 틀어서 건축 하였는데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니 철거하고 설계변경 후 건축하라는 것은 손실이 크니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조 중 익	

② 조사내용

□ 신청 취지

2018.06.28. 건축신고(화성시 금곡동 ○○○번지, 전495㎡)를 득하고, 같은 날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 중에 설계대로 건축하면 인근가옥과의 간격이 너무 좁아 피해방지를 위해 건물위치를 약간 틀어서 건축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니 이를 철거하고 설계변경 후 건축하라는 것은 손실이 크니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당 건축물은 2018.06.28. 건축신고(화성시 금곡동 ○○○번지, 전495㎡)를 득하고, 같은 날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을 하던 중,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에 의거 피신청인에게 설계를 변경한 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착공함.

나. 이후 신청인이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하지 않고 설계 변경 신고하여 해당부서(지역개발과)와 협의한 바, 지반의 붕괴와 재해 예방 조치로서 사람, 인근 가옥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건축신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해당부서의 협의 결과에 따라 2018.12.24. 신고사항 변경처리 함.

□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화성시 금곡동 ○○○번지 전495㎡에 2018.06.28. 건축신고를 득하고, 같은 날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 중에, 설계대로 건축하면 인근가옥과의 간격이 너무 좁아 피해방지를 위해 건물위치를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건축 중에 건축신고를 변경하여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신청인에게 통보.

다. 이후 신청인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고 재신청하여 건축산업과에서 해당 부서(지역개발과 등)와 협의한바, 지반의 붕괴와 재해 예방 조치로서 사람, 인근 가옥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건축신고를 변경할 수 있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 2018.12.24. 신고사항변경 처리 함.

③ 조사결과

□ 판 단

건축신고(화성시 금곡동 ○○○번지, 전495㎡)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에 의거 피신청인에게 신고를 한 후 건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건물위치를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건축을 한 신청인에게 건축법위반 통보는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이후 신청인이 인근 가옥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건축설계를 변경하고 피신청인에게 재신청하여 건축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득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 결 론(심의해소)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재 신청한 건축신고사항을 변경 처리하여 민원이 해소됨

13. 수목장림 조성허가관련 공사중지 명령 부당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득하고 진행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평가 사업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여 공사 중지를 한 것은 부당함
조 중 익	

② 조사내용

□ 신청 취지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 소재 보전관리지역에 임야 10,803㎡ 상에 수목장림 조성 허가(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하고 사업진행중 담당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평가 대상사업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여 공사 중지를 한 것은 부당함.

□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노인복지과에는 2018.10.16. 종교단체에서 허가받은 수목장장림 조성허가 부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를 득하지 않고 허가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규모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한 내로 제출할 것을 요구
- 나.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의 처분은 환경영향평가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분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인데,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분결과 없이 공사 일시 중지의 행정처분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2018.10.29. [노인복지과-24716(2018.10.16.)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관련 공사 일시 중지 알림] 은 2018.10.30.(화)일자로 해제하였음.

□ 사실관계

- 가.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 소재 보전관리지역에 임야 10,803㎡ 상에 수목장림 조성허가(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하고 공사 중에 노인복지과에서 2018.10.16. 종교단체에서 허가받은 수목장장림 조성허가 부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를 득하지 않고 허가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규모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한 내(2019.1.17.까지)로 제출할 것을 요구

나. 이후 노인복지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의 처분은 환경영향평가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분 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인데,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분결과 없이 공사 일시 중지의 행정처분은 피신청인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2018.10.30.(화)일자로 해제하였음.

□ 판 단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환경영향평가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분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인데,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분결과 없이 공사 일시 중지의 행정처분은 피신청인 스스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공사 중지를 해제한 것으로 판단됨

□ 결 론

위와 같이 피신청인 스스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공사 중지를 해제하여 민원 해소됨

14. 개발행위준공신청 반려처분 취소 요청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단계에 이르렀으나 부서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개발행위준공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함
김 시 관	

② 조사내용

□ 신청 취지

- 신청인인 농업회사법인 ○○(주)이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외 2필지에 공장을 등록하기 위하여 허가민원1과(개발행위허가)와 건축과(건축허가)의 허가를 받아 준공단계에 있으나 두 부서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준공신청이 반려처분 되었음.
- 위 법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설립지원금 투자완료 기한이 11월이므로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람

□ 피신청인의 주장

- 허가민원1과의 주장
준공도면 등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의 도면과 상이하여 보완조치 후 재심의 거쳐 준공처리할 것임.
- 건축과의 주장
허가민원1과의 준공조치에 따라 처리될 것임

□ 사실관계

- 개발행위허가(공장신설승인)
2018. 6. 7. 피신청인(허가민원1과)은 신청인에게 봉담읍 덕우리 ○○○-○외 2필지 총면적 4,715㎡ 중 부지 2,884㎡에 대하여 건축연면적 1,720.03㎡(제조시설 1,440㎡, 부대시설 280.03㎡)의 공장을 신설하도록 개발행위허가 하였다.
- 위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였다.
- 개발행위협의 ‘기타조건’ 7호에 “부지면적 및 건축물의 연면적이 심의받은 계획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와 “당초 심의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 건축허가

2018. 7. 26. 피신청인(건축과)은 신청인에게 대지 2,884㎡, 건축연면적 1,747.97㎡[(제조시설 1,409.34㎡(제1동은 969.34㎡ 제2동은 440㎡) 제3동 부대시설 338.63㎡)]를 건축하도록 허가하였다.

- 공장설립승인 협의와 관련하여 공장설립승인 내용보다 제조시설면적이 30.66㎡ 감소하였고 부대시설면적은 8.42㎡ 증가하여 공장설립승인 면적보다 22.24㎡ 감소하여 1,747.97㎡로 변경되었음을 도면으로 표시하고 있다.
- 위 건축허가업무를 처리하면서 허가민원1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개발 행위허가도서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이라고만 협의·회신하였다.

- 2018. 10. 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는 피신청인에게 “농업회사법인 ○○(주)이 2018. 3월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설립지원금을 지원받아 현재 봉담읍 덕우리에 공장을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6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 중이고 공장 완공시 11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하며 설립지원금 투자완료 기한이 11월로 시일이 촉박한 상황” 임을 알리고 사업장이 11월 중에 완공되어 장애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건축변경허가

2018. 11. 1. 피신청인(건축과)은 2동 건축물의 높이를 6.2m에서 7.7m로 1.5m 높이는 것에 대하여 변경허가 하였다.

- 피신청인은 2018. 11. 14. 신청인의 준공검사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건에 따른 조치계획 이행 후 사진대지 및 준공도면 수정제출” 등을 요구하면서 보완 조치하였다.

③ 조사결과

□ 판 단

- 신청인은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피신청인 내부의 협조업무가 원활하지 못하여 준공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 준공도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비교하여 “부지면적 및 건축물의 연면적이 심의 받은 계획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고 “당초 심의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대상도 아니다.

□ 결 론 (심의해소)

이 건 조사처리 기간 중인 2018.11. 30. 공장부분등록 및 건축물임시사용이 승인되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설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민원 해소 됨

15.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지연 불만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도로과 협의지연으로 미지급 용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니 신속한 보상 요구
박 종 풍	

② 조사내용

□ 신청 취지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〇〇〇-〇번지(지목:도로)는 미지급 용지로 도로과 협의지연으로 보상이 지연되어 있으니, 신속하게 보상 요구함

□ 피신청인의 주장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〇〇〇-〇번지(지목:도로)는 검토 결과, 미지급 용지로 금년 보상은 이미 마감되어, 2019년 1월에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 2월경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 함.

□ 사실관계

확인결과,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〇〇〇-〇번지(지목:도로)는 보상해야 할 미지급 용지로 금년에는 보상은 이미 마감되어, 2019년 1월에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 2월경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 함.

③ 조사결과

□ 판 단

건설과 보상팀에서 2019년 1월 감정평가를 거쳐, 2월 경에 보상할 것이라 함으로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 됨.

□ 결 론 (심의해소)

민원인에게 보상절차, 시기 등을 알려주고 민원 종결 처리 함.

16. 개발행위허가 변경 보완 부담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명의변경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와 측량업등록증을 추가로 보완하는 것은 부담함
김 진 환	

② 조사내용

□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18.10.25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번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변경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 신청인(허가민원2과)이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와 함께 실측자의 측량업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보완요구하고 있음.

측량업등록증과 다른없는 국가기술자격증 및 대한측량협회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 피신청인의 주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와 함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제3항에 따른 측량업을 등록한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실측자에 대한 증빙(측량업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한 것임.

③ 조사결과

□ 사실 및 법률관계

가. 2018.10.25. 신청인은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번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후 2018.11.09.전 소유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을 신청함.

나. 2018.12.14. 피 신청인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를 작성한 자의 측량업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2019.01.14. 측량업등록증이 아닌 국가기술자격증 및 대한측량협회 자격증을 제출함.

다. 2019.01.14. 피 신청인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를 제출하도록 보완요구하면서, 측량업 등록증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제시한 자격증 등이 측량업등록증을 대체할 수 없음을 통보.

라. 2019.01.17. 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호에 산지전용허가를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변경 등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2019.01.18. 피 신청인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측량업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보완없이 변경허가를 하도록 통보하였음.

(허가민원2과-3641)

□ 판 단

변경허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2항 제3호 토지등기사항 등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당부서에서 불필요한 측량업등록증을 요구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보완없이 2019.1.21. 변경허가 처리함.

□ 결 론(심의해소)

신청인의 요구를 피 신청인이 수용하여 민원이 해소 됨.

17. 기타 수범사례

【제 목】 : 모범 선행 사실 통보

【수신인】 : 화성시장(자치행정과장),감사원장(적극행정지원담당관),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과장)

【발신인】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모범 선행 사실】

경기도 화성시 現 건설과 소속 행정주사보 박○○ 주무관은 2016.4.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실에 근무하면서 당초 국유지로서 회센터 진입로로 쓰이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 소재 임야 1,096㎡ 국가를 상대로 한 조상 땅 찾기 운동을 하던 어떤 사람의 소송제기로 ‘위 토지 ○○○-○ 은 당초에 ○○○번지에서 분필되었다는 전제하에 ○○○번지를 국가가 매입한 사실이 없어 ○○○-○은 당초 모(母)번지인 ○○○번지 소유자의 땅이다’ 라는 요지로 국가가 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17909)함에 따라 위 ○○○-○ 번지의 국가 소유권이 2016.3.2.사유지(소유자: 김○○ 후손 김○○외 10인)로 둔갑되었고,

그 후, 이 토지를 매입한 제3자가 그 땅에 컨테이너박스 2개를 갖다놓고 회 센터 진출입을 막으면서, 도로 노면에 빨간색 페인트로 ‘침범금지’ 라고 써 놓고,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26개 점포 상인들에게 매달50만원씩의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등 야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위 회센터 입주자대표 김○○ 외1인(○○○)이 경기도, 화성시, 권익위 등에 탄원서를 제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모두 사법부 판결인 만큼 ‘방법이 없다’ 는 답변만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16.4.18. 화성시 옴부즈만실을 찾았던 바,

당시 옴부즈만실에 근무하던 위 사람이 당초 위 지점은 공유수면으로 화성군에서 1996.11.11.~ 2001.11.10.까지 우정읍 매향리 어촌계에 점용 허가하였다가, 2002.5.10. 연안공유수면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신청에 의해 국유지로 신규 등록되었다는 20여년전의 기록을 찾아내어, 이를 국유재산 관리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민원인에게 통지하였고, 민원인과 위 공사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제기하여, 2018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국가 승소 판결(대법원2018다226466. 2018.7.25.)을 받아, 해당 토지를 국유지로 되찾게 되었고, 상인들의 억울한 민원도 해소시킨 사실이 있음.

VI

부 록

VI. 부 록

1. 홍보활동

(1) 홍보 리플렛 배부(2018년 1월/ 7월)

기존 행정구제 제도와의 비교

구분	음부조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목적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불만·부담을 받은 경우 권익구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독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
성격	비쟁송제도	쟁송제도	쟁송제도
기간	제한없음	행정처분후 90일 이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인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범위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부작위·불편·부담 등 포괄적	행정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행정의 적법성 유무 (재량권 일탈·남용 포함)
접근성	접근성 높음	행정소송보다는 접근이 용이	접근성이 매우 어려움
비용	무료	행정소송보다는 경제적 부담은 적은 편	경제적 부담이 높음

18274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Tel. 031-369-3227, 3704 / Fax. 031-369-1788

The Way to Better Living
같이 열리는 **화성시 시민음부조만**

www.hscity.go.kr

화성시 시민음부조만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확대 운영

일시 : 2018. 2. 5. 부터 매주 월요일 9시~18시
장소 : 동부출장소 별관 1층 소회의실

음부조만의 기능

- 시민권리 구제 기능
- 행정의 민주적 통제 기능
-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기능
- 행정개혁 기능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기능

(2) 시 홈페이지 홍보(2018년 2월, 12월)



사람이 먼저인 화성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동부권 확대 운영"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2018. 2월부터 매주 월요일 시행)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실 ☎031)369-3704, 3227

동부출장소 소회의실



건강·복지 일자리·교육 교통·환경 기업지원 농업축수산 밥·제도 세금·경제 여성·가족 재난·재해 주택·부동산

HWASEONG SPORTS COMPLEX

화성종합경기타운 개방

기간 2018. 11. 19.(월) 부터

시간

- 평일 18:00 - 22:00
- 주말/공휴일 09:00 - 22:00

※ 11월 24일, 25일 폐쇄



제부도 바닷길

2018-12-20 (목)

03:00 ~ 13:17

16:38 ~ 01:56

직원찾기	조직도
연구현황	알림마당
민원신청	콘센터



안녕하세요
서철모입니다

열린시장실 바로가기 >

- 인사말
- 주요연설문
- 화성시의 비전 · 시민과의 약속
- 시민소통광장 · 포토뉴스

시정알림방 보도자료 공고/고시 채용정보 +

2019년도 향토음식 및 쌀가공 연구회 신규회원 모집공...

2019년도 향토음식 및 쌀가공 연구회 신규회원 모집 공고 본 연구회는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교육 수요자들의 능력개발과 전문기술 배양 및...

국민권익위원회 화성시 이동신분고 은명예(민원신청) 따른...	2018-12-20
2019년 서해농업연실용 교육 안내	2018-12-19
시립목동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2018-12-19

고충민원 신청

화성시청 시민옴부즈관실
031-369-3704, 3227



115

(3) 버스 정류장 전광판 홍보(2018. 2월/ 7월)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시민의
고충을
함께결함께
드려받습니다!

고충민원 신청안내
방문: 화성시청 시민옴부즈만실
전화문의: 031-369-3704, 3227

(4)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시범 운영(2018. 10~11월, 봉담읍, 남양읍)



(5) 타시군 우리시 옴부즈만 벤치마킹(2018. 2.21.: 파주시, 2018. 8. 6.: 상주시)



2.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12. 31 조례 제 895호
일부개정 2015. 2. 27 조례 제 981호
일부개정 2017. 1. 9 조례 제118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소속기관등”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17. 1. 9)

②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하되,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2017. 1. 9)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 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신설 2017. 1. 9)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②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 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제11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때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제6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기 관할을 정한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가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5.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전문개정 2017. 1. 9]

제7조(옴부즈만의 책무)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있어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 대표옴부즈만과 부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7. 1. 9]

제9조(회의) ①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하며,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재적옴부즈만이 1명일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1. 9)

1. 의견표명,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의 심의·의결은 재적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옴부즈만이 2명일 경우에는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6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제11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 ② 옴부즈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옴부즈만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화성시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옴부즈만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7. 1. 9)
- ③ 시장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 지역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3. 지역의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추천

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옴부즈만 상호간의 관계) 옴부즈만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기구)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17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 소속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소속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9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구체적 증거나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9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17. 1. 9)

제22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7. 1. 9)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서 정한 직무 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6.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3조(합의권고 및 조정)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4조(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관계 소속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관계 소속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5조(제도개선의 권고와 의견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및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6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 옴부즈만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9)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와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정책·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제33조(사무국)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옴부즈만이 겸직하고 사무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 또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활동과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7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9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의 진행) ①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회의는 대표옴부즈만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며,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파견 공무원이 수행한다.

③ 의안의 제안 설명은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이 한다.

④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서의 경정) ① 옴부즈만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옴부즈만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피신청을 받은 옴부즈만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대표옴부즈만이 한다.

④ 옴부즈만이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옴부즈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회)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문기구로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표옴부즈만이 되며, 위원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 ⑦ 옴부즈만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⑧ 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⑨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만은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합의 권고 및 조정)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합의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

- ② 옴부즈만은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는 옴부즈만이 주재한다.
- ③ 옴부즈만은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부서 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소속기관 등의 회신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25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제도·시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소속기관 등의 회신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30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소속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조례 제31조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소속기관 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사무국의 업무)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접수 및 민원 조사·처리 지원

2. 옴부즈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옴부즈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비치

5. 그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 옴부즈만 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이 부재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옴부즈만이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시장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적합한 공무원 또는 직원을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견 후 복귀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옴부즈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7조(활동비 지원) 옴부즈만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의 지급기준은 4급 상당 공무원 연봉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공인)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기록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20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은 생략

4.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운영전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활동비”란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2. “활동비월액”이란 활동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써 4급 상당 공무원 평균 연봉의 2분의 1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활동기간”이란 옴부즈만이 위촉된 날부터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 2 장 근무 규정

제3조(기본자세) ① 옴부즈만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옴부즈만의 1주간 근무시간은 20시간으로 하며, 평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의 1일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09:00 ~ 18:00) 내에서 지정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옴부즈만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 지정은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표옴부즈만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운영회의가 개최되는 월요일에는 합동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근무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제6조(신분증 제시) 옴부즈만은 「화성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 19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출장) ① 옴부즈만은 출장 중에는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옴부즈만 근무일(근무시간)에 다른 옴부즈만이 부재중인 경우 출장을 지양하고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관내·관외출장을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옴부즈만은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옴부즈만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무의 인계인수는 「화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연락체계의 유지) ① 옴부즈만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의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제11조(대표옴부즈만 선임기간) 조례 제8조에 따라 호선된 대표 옴부즈만의 선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3 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12조(고충민원 상담과 신청)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상담시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고충민원 신청은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7조제2항 단서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문맹이나 문서 이해능력의 부족 등으로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이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다수인 관련 민원) “다수인”이란 5명 이상을 말한다. 다만, 다수인 관련 민원의 신청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서로 다른 2 이상의 고충민원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고충민원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2회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고충민원기록표) 고충민원을 접수한 옴부즈만은 민원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기록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17조(신청인의 권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옴부즈만은 민원의 조사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후에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의 취하) ① 옴부즈만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고충민원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면으로 취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기록으로 남겨 처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하여 고충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을 고충민원기록표와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의 원칙) ① 진행 중인 2 이상의 민원이 같은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고충민원 처리과정에 직접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고충민원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조) 옴부즈만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옴부즈만에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안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당해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방침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의 종결 등) ① 조례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옴부즈만에서 각하한 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없이 다시 제기한 경우
2. 옴부즈만에서 이미 처리한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이첩된 경우
3. 신청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4.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절차 등의 관한 질의
5.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없이 종결하거나 그 민원사항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3. 시행규칙 제9조에 해당되는 경우

③ 옴부즈만은 제2항과 같이 처리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정의 의뢰가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처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옴부즈만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회의 심의 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처리기간의 계산)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조사방법) ① 고충민원의 조사는 조례 제20조제1항의 각 호에 의하되, 당사자 주장내용,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고충민원 신청서의 사본을 송달하고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을 할 수 있다.

④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출석조사) 옴부즈만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26조(실지조사)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거나 현지에서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들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합의 및 조정) ①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서가 제출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합의서 또는 조정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합의에 참여한 옴부즈만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에 대한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사후관리카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결과 보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29조(결정의 통지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3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 ② 처리결과 통지는 문서로 하며 신청인이 원할 경우 인터넷·팩스도 가능하다.
- ③ 옴부즈만은 결정내용이 권고 또는 의견표명인 경우 의결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30조(재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에서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하거나 재심을 요청한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만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운영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 ③ 재심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관계 소속기관에서 다시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옴부즈만 결재로 중지·종결 처리한다.

제31조(처리결과 이행실태 사후관리) ① 옴부즈만은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사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서 통보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사후관리카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옴부즈만은 매월 처리결과 이행실태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이행촉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31조제1항에 의거 매년 12월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결과를 집계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운영상황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운영회의

제33조(운영회의 개최) 고충민원 조사여부 결정 및 결정사항 심의·의결을 위하여 운영회의를 매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제34조(조사여부 결정)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여부를 결정한다.

- ② 고충민원 내용이 운영세칙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없이 종결처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35조(주관 옴부즈만의 지정) ① 조사심의를 필요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옴부즈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주관 옴부즈만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옴부즈만의 소속·성명·연락처를 기재하고 조사실시를 통지해야 한다.

제36조(심의·의결)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하여 결정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② 심의·의결 직후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에 의결에 참가한 옴부즈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 ③ 옴부즈만은 심의·의결된 고충민원 결정사항을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의 의결서를 통지해야 한다.
- ④ 옴부즈만은 재심의 사안에 대하여도 의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의결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 5 장 자문위원회

제37조(자문위원 위촉)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옴부즈만이 위촉한다.

1. 도시계획, 건축, 토목, 환경, 교통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도시계획, 건축, 토목, 환경, 교통 등의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등으로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옴부즈만이 인정하는 자

제38조(위촉해제)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만료 또는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자문위원회 참석 또는 개별자문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9조(회의소집) ①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 의거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 대표 옴부즈만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개별자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위원에게 개별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자문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한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개별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개별자문을 수행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국 운영지원

제42조(활동비 지급기준) ① 시행규칙 제17조 및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세칙」 제3조 제2호의 “4급 상당 공무원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따른 별표 33 중 4급(상당) 공무원 연봉한계액의 평균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② 옴부즈만의 활동비는 활동비월액에 따라 지급하며, 월 실제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 별표1에 따른 산식에 의거 지급한다.

제43조(활동비 지급기관) 옴부즈만의 활동비는 화성시에서 지급한다.

제44조(활동비 지급방법) ① 옴부즈만의 활동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활동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활동비 지급일) ① 활동비의 지급일은 매월 5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성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③ 위촉해제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해제일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관리대장) ①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관련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관련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7조(사무결재의 기준) ① 옴부즈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옴부즈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결재기준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이 세칙은 옴부즈만 운영회의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활동비 산식

※ 월 실제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

■ 활동비 월액 × (월 실제 근무시간 / 80 시간)

[별표 2]

사무결재 기준

단위사무	사무 처리내용	기안자		결재자
		주무관	주 관 시민옴부즈만	사무국장 (대표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	일반민원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 이첩	○		○
			○	(1인결재)
	고충민원 신청의 보완 취하		○	(1인결재)
	조사가 불필요한 민원인 경우, 조사의 중지·종결 (각하, 이송, 이첩)	○		○
	조사실시 통지		○	(1인결재)
	출석 및 실지조사 관련 참석요청		○	(1인결재)
	처리기간 연장		○	(1인결재)
	이해당사자간 조정 또는 합의		○	(1인결재)
	필요시 자문위원회 개최		○	(1인결재)
	고충민원 기각		○	(1인결재)
	고충민원 조사결과 결정사항 통지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등)		○	(1인결재)
	재심의 결정사항 통지		○	(1인결재)
	처리결과 이행실태 관리		○	(1인결재)
		○		○
	감사의뢰		○	(1인결재)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	○
사무국 운영지원	옴부즈만 근무상황 관리	○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

※ 별지 서식은 생략

